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2015. 8. 20.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목 차

I.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1
II. 첨부자료	13
1. 최종가결안건	13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15
2)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수정가결)	23
3)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9
2.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77
3. 부의안건	81
1)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변경안	83
※ 원안가결된 안건은 최종가결안건 자료로 대체	
4. 회의록취록 전문	125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1. 제1차 재정위원회 임시회
2. 제1차 재정위원회 임시회 소위원회
3. 제2차 재정위원회 임시회

금오공과대학교

- 일 시 1. 제1차 재정위원회 임시회<2015년8월20일(목) 개회11시4분, 산회13시40분>
 2. 제1차 재정위원회 임시회 소위원회<2015년8월20일(목) 개회13시46분, 폐회14시20분>
 3. 제2차 재정위원회 임시회<2015년8월20일(목) 개회14시30분, 폐회14시35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2.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3.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타안건

1. 재정위원회 회기결정

부의된 안건		의결상황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2.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일부수정 가결(전원찬성)
3.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기타안건	1. 재정위원회 회기결정	‘15.8.20.~ ‘15.8.29.(총10일)

□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 주요내용

일 시	회의내용																				
1차 임시회 2015년8월20일(목)	1. 재정위원회 임시회 개의 및 신입 위원 소개 2. 회기결정 : 2015.8.20.~8.29(10일간) 3. 안전심의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원안가결) 2)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수정가결) <table><thead><tr><th colspan="2">원안</th><th colspan="2">수정안</th></tr></thead><tbody><tr><td colspan="2">1. 교육영역</td><td colspan="2">1. 교육영역</td></tr><tr><td colspan="2">□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td><td colspan="2">□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td></tr><tr><td>평가영역</td><td>반영비율</td><td>평가영역</td><td>반영비율</td></tr><tr><td>연구영역</td><td>전체 예산의 32.7%</td><td>교육영역</td><td>전체 예산의 32.7%</td></tr></tbody></table> 2. 교육영역 지급기준의 구분란의 “지정선택 3. 연구영역 평가지표의 적요란 중 ○ 선택지표 ①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4.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의 평가방식란 중 -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5.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 중 학생면담 평가방식 - 학생면담 학기당 20회이상 : 1,600천원(학기) · 20회미만 시 회당 80,000원 감액 ※ 2015년도 연 40회이상 6.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 기준 중 1. 지원대상자 : 2015. 3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2014.9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포함함) 2. 교육영역 지급기준의 구분란의 “지정선택 지표” 3. 연구영역 평가지표의 적요란 중 ○ 선택지표 ②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4.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의 평가방식란 중 -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5.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 중 학생면담 평가방식 - 학생면담 학기당 15회이상 : 1,600천원(학기) · 15회 미만 시 회당 1% 금액 감액 ※ 다만, 학기당 최소 5회 이상 학생면담 실시 6.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 기준 중 1. 지원대상자 : 2015. 3월 현재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2014.9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포함함)	원안		수정안		1. 교육영역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32.7%	교육영역	전체 예산의 32.7%
원안		수정안																			
1. 교육영역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32.7%	교육영역	전체 예산의 32.7%																		
1차 소위원회 2015년8월20일(목)	1. 안전심의 1)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2차 임시회 2015년8월20일(목)	1.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 안전심의 1)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3. 임시회 폐회 선포																				

□ 회의록 서명부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고
1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위원장
2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부위원장
3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4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5	사 무 국	사무국장	박 성 수		
6	학 생 처	학생과장	김 중 필		
7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10	입학관리본부	직 원	천 병 광		
11	산학협력단	직 원	이 희 천		
12	기계시스템공학과	재학생	황 정 민		
13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진 주 호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총무과장	배 효 근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위원 참석부

2015. 8. 20.(목)

연번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당연직 위 원 (6명)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이재원	
2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방대석	
3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이승희	부위원장
4		사 무 국	사무국장	박 성 수	박성수	
5		학 생 처	학생과장	김 종 필	김종필	
6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정연구	
7	일반직 위 원 (9명)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채창현	위원장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최낙렬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구정호	
10		입학관리본부	직 원	천 병 광	천병광	
11		산학협력단	직 원	이 희 천	이희천	
12		기계시스템공학과	재학생	황 정 민		
13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진 주 호	진주호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장세광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총무과장	배 효 근	배효근	

재정위원회 임시회 소위원회 위원 참석부

[총 6명]

2015. 8. 20.(목)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회	이승회	
2	사 무 국	사무국장	박 성 수	박성수	
3	학 생 처	학생과장	김 종 필	김종필	
4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정연구	
5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최낙렬	
6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구정호	
간사	사 무 국	재정정책팀장	강 태 구	강태구	

<첨부자료목록>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최종가결안건	제1호안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제2호안건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제3호안건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호 안건은 수정가결
소위원회 심의 보고서	소위원회 심의 보고자료	
부의안건	제2호안건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제1, 3호 안건은 최종가결 자료로 대체
회의 녹취록 전문	1. 제1차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녹취록 2. 제1차 재정위원회 임시회 소위원회 회의녹취록 3. 제2차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녹취록	

<첨부자료>

1. 최종가결안건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개정 사유

- 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은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영
- 나. 영역별 지급기준, 실적평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도별 지급 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임교원의 영역별 지급기준(안 제8조)과 직원의 영역별 지급기준(제9조)의 합함
- 나. 실적평가에 대한 내용을 삭제(제10조)
- 다.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 : 교육부-6212(2015.07.16.) 「대학회계 안착 방안」 가이드라인
- 나. 합의 : 기획위원회(2015.7.27.), 규정심의위원회(2015.8.17.), 교무회의(2015.8.18.)
- 다. 기타 :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다만, 연구년, 휴직” 을 “다만, 휴직”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연도별 지급계획)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

부 칙 (1차 개정 2015. 0. 00. 규정 제0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대상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u>다만, 연구년, 휴직, 파견 및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이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u> 제8조(전임교원의 영역별 지급기준) ① 전임교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영역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비율은 교육 지원비 50%, 연구지원비(산학협력 포함) 20%, 학생지도비 30%로 한다. 다만, 연구년 교수 등의 경우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은 총 예산의 20%를 학기 초에 선지급하고, 학기 말에 실적보고서 제출시 20%를 지급하고, 10%는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3. 연구영역은 총 예산의 40%를 학년도 초에 선지급하고, 학년도 말에 실적보고서 제출시 40%를 지급하고, 20%는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4. 실적평가는 4단계(S, A, B, C)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며, 실적이 없는 자는 C 등급을 부여하여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5. 평가집단은 전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영역은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따른 산학계열과 비산학계열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영역별 평가항목, 평가방법, 제출서식 등 세부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따르되,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직원의 영역별 지급기준) 직원(조교	제4조(지급대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대상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u>다만, 휴직, 파견 및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이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u> 제8조(연도별 지급계획)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삭 제>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제정 2015. 7. 30. 규정 제881호
1차 개정 2015. 00. 00. 규정 제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에 따라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편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④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의 지급계획(제1항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제4조(지급대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대상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휴직, 파견 및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이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00.00.>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④ 일반직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수지원팀장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역할,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심사 및 개인별 지급액 결정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제·개정
2.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지급계획)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5.00.00.>

제9조 삭 제 <2015.00.00.>

제10조 삭 제 <2015.00.00.>

제11조(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1.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2. 실적평가시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3. 연구년,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지급된 비용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②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 <2015.00.00.>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5. 7. 30. 규정 제8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차 개정 2015.00.00. 규정 제0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2015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2015. 8. 20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심의 수정사항(8.20)

[제2호 안건]

<2015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

상정 안	심의 후 수정안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table><tr><th>평가영역</th><th>반영비율</th><th>비고</th></tr><tr><td>연구영역</td><td>전체 예산의 32.7%</td><td></td></tr></table>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32.7%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table><tr><th>평가영역</th><th>반영비율</th><th>비고</th></tr><tr><td>교육영역</td><td>전체 예산의 32.7%</td><td></td></tr></table>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교육영역	전체 예산의 32.7%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32.7%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교육영역	전체 예산의 32.7%												
2. 교육영역 지급기준의 구분란의 “지정선택”	2. 교육영역 지급기준의 구분란의 “지정선택 지표”												
3. 연구영역 평가지표의 적요란 중 ○ 선택지표 ①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3. 연구영역 평가지표의 적요란 중 ○ 선택지표 ②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4.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 : 붙임	4.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 : 붙임												
5.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기준 중 1. 지원대상자 : 2015. 3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2014.9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포함함)	5.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기준 중 1. 지원대상자 : 2015. 3월 현재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2014.9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포함함)												

[상정 안]

□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의무 제출		계획서 제출	-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개별 제출
		보고서 제출	- 학생지도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개별 제출
평가 항 목	공통 지표	학생면담	- 학생면담 학기당 20회이상 : 1,600천원(학기) · 20회미만 시 회당 80,000원 감액 ※ 2015년도 연 40회이상	기간중 원스톱 서비스 입력자료
	선택 지표	학생취업활동	① 학생취업지도(취업지원본부에서 인정하는 실적) : 건당 1점	취업지원 본부
		학생 비교과 활동 지원	②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평가건수당 0.5점	도서관
			③ 독서토론지도: - 지도학생수 11명 이상 3점 - 지도학생수 5~10명 2점 - 지도학생수 1~4명 1점	
			④ 현장실습지도: 건당 1점	현장실습 교육센터
			⑤ 지도학생의 외부 경진대회 수상실적 : 건당 3점	기간중 제출자료
	지정 선택 지표	학생활동지원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 참조 : 1점당 80,000원(최대 25점까지 인정) ※ 2015년도 2학기 기준임(연간 최대 50점)	일지 및 결과보고서

[수정 안]

□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의무제출		계획서 제출	- <u>공통지표</u>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개별 제출
		보고서 제출	- 학생지도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개별 제출
평가항목	공통지표	학생면담	- <u>학생면담 학기당 15회이상 : 1,600천원(학기)</u> · <u>15회 미만 시 회당 1% 금액 감액</u> ※ <u>다만, 학기당 최소 5회 이상 학생면담 실시</u>	기간중 원스톱 서비스 입력자료
	선택지표	학생취업활동	① 학생취업지도(취업지원본부에서 인정하는 실적) : 건당 1점	취업지원 본부
		학생 비교과 활동 지원	②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평가건수당 0.5점	도서관
			③ 독서토론지도: - 지도학생수 11명 이상 3점 - 지도학생수 5~10명 2점 - 지도학생수 1~4명 1점	
			④ 현장실습지도: 건당 1점	현장실습 교육센터
			⑤ 지도학생의 외부 경진대회 수상실적 : 건당 3점	기간중 제출자료
	지정선택지표	학생활동지원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 참조 : 1점당 80,000원(최대 25점까지 인정) ※ 2015년도 2학기 기준임(연간 최대 50점)	일지 및 결과보고서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변경 내용

	최초 안	변경 안																														
1	지급대상 : 전임교원 ※ 직원(조교 포함)은 별도 수립	지급대상 : 교직원 ※ 직원(조교, 대학회계직원 포함) 예산 편성																														
2	예산총액 : 2,992,358천원 ※ 전임교원에 대한 예산만 편성 - 산출근거 <table><tr><td>직급</td><td>지급액 (연액)</td><td>인원 (`15.4.1 기준)</td><td>소요예산</td></tr><tr><td>총장</td><td>17,160</td><td>1</td><td>17,160</td></tr><tr><td>교수</td><td>14,450</td><td>156</td><td>2,254,200</td></tr><tr><td>부교수</td><td>12,470</td><td>23</td><td>286,810</td></tr><tr><td>조교수</td><td>11,426</td><td>38</td><td>434,188</td></tr><tr><td>계</td><td></td><td>218</td><td>2,992,358</td></tr></table>	직급	지급액 (연액)	인원 (`15.4.1 기준)	소요예산	총장	17,160	1	17,160	교수	14,450	156	2,254,200	부교수	12,470	23	286,810	조교수	11,426	38	434,188	계		218	2,992,358	예산총액 : 4,893,394천원 ○ 교원 2,933,094천원(2014년도 결산액) ○ 직원 486,500천원 ○ 교내 학술연구지원비 1,374,800천원 ○ 영어강의지원비 99,000천원 ※ 교원 예산 산출근거 - 교원(총장포함) 2014년도 연구보조비 결산금액 : 2,933,094천원						
직급	지급액 (연액)	인원 (`15.4.1 기준)	소요예산																													
총장	17,160	1	17,160																													
교수	14,450	156	2,254,200																													
부교수	12,470	23	286,810																													
조교수	11,426	38	434,188																													
계		218	2,992,358																													
3	지급비율 교육:연구:학생 = 50:20:30	교육:연구:학생 = 32.4:41.6:26.0 ※ 영어강의지원비, 교내 학술연구비 및 직원예산 포함. 전임교원의 지급비율은 동일																														
4	선택지표 차등지급률 <table><tr><td>구분</td><td>S</td><td>A</td><td>B</td><td>C</td></tr><tr><td>인원</td><td>5%</td><td>90%</td><td>5%</td><td></td></tr><tr><td>금액</td><td>105%</td><td>100%</td><td>95%</td><td>무</td></tr></table>	구분	S	A	B	C	인원	5%	90%	5%		금액	105%	100%	95%	무	선택지표 차등지급률 <table><tr><td>구분</td><td>S</td><td>A</td><td>B</td><td>C</td></tr><tr><td>인원</td><td>20%</td><td>60%</td><td>20%</td><td></td></tr><tr><td>금액</td><td>120%</td><td>100%</td><td>80%</td><td>무</td></tr></table> ※ B등급의 최저점수 부여	구분	S	A	B	C	인원	20%	60%	20%		금액	120%	100%	80%	무
구분	S	A	B	C																												
인원	5%	90%	5%																													
금액	105%	100%	95%	무																												
구분	S	A	B	C																												
인원	20%	60%	20%																													
금액	120%	100%	80%	무																												
5	교육 및 학생지도영역 총장 지표 반영	삭제																														
6	연구년 교수에 대한 적용 교육:연구:학생 = 20:50:30	연구년 교수는 교육영역의 교재개발비(신설) 및 연구영역만 지급 가능																														
7	지급계획(총칙부분) 기본원칙, 예산현황, 기타사항으로 구분	지급계획(총칙부분) 내용 추가 기본원칙, 지급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제한 및 환수, 예산 및 교직원 현황,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실적물) 심사 시기, 지급시기, 평가집단, 기타사항으로 구분																														

[교육영역]

필수 지표	기존안	강의개선활동: 강의평가
	변경안	강의개선활동: 책임시수 준수, CQI 제출 ※ 미달시, 1학점당 1% 감액
선택 지표	기존안	포트폴리오, 책임시수, 학부학생 수강인원
	변경안	학부강의평가점수, 수업보조자료활용, 학부학생 수강인원
지정 선택	기존안	무
	변경안	교재개발비 신설 : 연구년 교수 대상 영어강의 지원비(별도 예산)

[연구영역]

※ 산학/비산학 구분 -> 동일

필수 지표	기존안	기본연구과제
	변경안	기본연구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중 택 1
선택 지표	기존안	교외연구과제 연구비, 학회학술논문발표, 학회참가, 기술이전, 특허, ※연구협의-심의-검정-평가 항목 삭제
	변경안	교외연구과제 연구비, 학술대회발표(4회부터), 학회참가(3회부터), 전문도서출판 저서, 기술이전, 특허, 지식(디자인)재산권
지정 선택 (별도 예산)	기존안	무
	변경안	○ 산학협력단 교내연구비 예산 합산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비, 논문게재발표경비 지원비, 국내학회참가 경비 지원비, 대외연구과제 선정 장려금(지원한 경우->선정된 경우)

[학생영역]

필수 지표	기준안	학생면담 : 최소 5회이상
	변경안	학생면담 학기당 20회 이상(2015년은 연 40회 이상) 20회 미만 시 1회당 8만원 감액
선택 지표	기준안	학생취업활동, 학생 비교과활동 지원
	변경안	변동없음
지정선택 지표	기준안	무
	변경안	학생활동지원실적 1점당 80,000원(학기당 최대 25점까지 인정) ※ 학생지도 실적 인정기준표 별도 첨부

2015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I 관련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

II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1. 목적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영역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 2015학년도에 대학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관련 예산은 모두 포함하되, 공통지표와 선택지표 및 지정선택지표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공통지표(80%) : 학기별 40%내에서 지급
- 선택지표(2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0~20%)
- 지정선택지표

- 영어강의지원비, 지정선택지표(연구영역) :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교재개발비, 학생활동지원비 : 본 계획 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라. 2015학년도는 각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연간 계획으로 제출받으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영역은 8월과 익년도 1월에 각각 40%, 학년말에 20%를 지급한다.

마. 선택지표에 대한 실적평가는 4단계(S,A,B,C)로 구분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C등급을 부여하여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휴직, 파견, 직위해제중인 자(해당 기간)
-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해당 분야 실적이 전혀 없거나, 최저점수 이하인 자

3. 실적 평가기준

- 가. 매년도 3월 1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학년말에는 실적인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각 영역별 실적은 해당 부서의 실적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실적자료가 없는 항목은 개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4. 담당부서

- 가. 영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자료제출부서에서는 실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 가.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 나. 실적평가지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 다.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지급된 비용
- 라.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 마.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시행일

- 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은 2015.3.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 포함)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1개 학기 기준 평가기간 예산이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 기본원칙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준수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활동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 계획서의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
- 비용 선지급급에 따른 환수 기준 명시
- K-CDP시스템에 기반한 학생 종합역량 자료 제출(전 영역 반영 가능)

2.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금오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자
- (지급 제외 대상자)
 - 휴가, 휴직, 파견, 신규임용, 직위해제중인 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에 학기별 1월 미만, 연구영역의 경우에는 연 2월 미만인 자
 -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7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에 따라 면직된 교직원
- (지급 제한 대상자)
 - 정년퇴직, 명예퇴직 대상 교직원은 퇴직 전 영역별 활동계획서와 영역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영역별 해당 비용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전액(기준액) 일시 지급함
 - 연구년제 교수 및 파견 중인 교직원의 경우 강의교재개발을 제외한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 영역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단, 강의교재개발 및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지급)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 (구성) 교무처장(위원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이 외 일반직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활동계획서, 실적 보고서 심사, 개인별 지급액 결정 및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의신청)
 - 비용 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제기기간 내 이의를 제기한 교직원이 없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별 비용 지급내역을 교무처 및 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영역별 비용 신청 및 지급 관련 증빙자료는 교무처 및 학생처에서 5년 이상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지급 제한 및 환수

- (처리방안) 지급 제한 및 환수 처리 방안

구 분	조 치	비 고
휴직 및 징계	- 해당기간 영역별 실적 불인정	·일할, 월할계산 등 지급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 최하등급 부여	·합당한 사유 시 재심의
보고서 미제출	- 선지급분 회수 - 잔여액 미지급	·타 영역 비용 미지급
실적물 허위제출	- 선지급분 전액 환수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전액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 지급된 비용 전액 환수 조치
 - 활동계획서 제출로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미제출 시
 -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없이 본인의 원(願) 또는 중징계(해임, 파면)에 따른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 적발 시

- 동일한 실적물에 대하여 이중 지급된 경우
- **(환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적보고서(실적물)를 제출하지 못한 교직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당 영역 선지급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유예 가능함
 -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최대 2개월 연장)
 - 천재지변, 전사·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환수면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환수방안)** 환수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환수금액 완납완료 시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중지
 - 차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서 환수금액 차감

5. 예산 및 교직원 현황

- 예산과목 : 대학회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 총 예산 : 4,893,394천원

영역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1인당 기준액
교육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지원비	1,130,310	5,500
	선택지표	교육활동지원비	286,465	1,370
	지정선택지표	교재개발비	70,000	
	지정선택지표	영어강의지원비	99,000	
	계(A)		1,585,775	6,870
연구	공통지표	기본연구지원비(기본/정책)	534,500	2,300/1,150
	선택지표	연구활동지원비	125,000	570
	지정선택지표	교내학술연구과제지원비	1,193,200	
		논문게재발표경비지원비	133,600	
		학회참가경비지원	36,000	
		대외연구과제선정장려금	12,000	
		소계	1,374,800	

영역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1인당 기준액
	계(B)		2,034,300	
학생 지도	공통지표	학생지도지원비	657,055	3,200
	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취업, 비교과)	164,264	800
	지정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취업비교과외)	452,000	2,000
	계(C)	소계	1,273,319	
합계(A+B+C)			4,893,394	

○ 세부현황

영역	구분	교원	직원	합계
교육영역	공통지표	1,130,310	-	1,130,310
	선택+지정선택지표	455,465	-	455,465
연구영역	공통지표	500,000	34,500	534,500
	선택+지정선택지표	1,499,800	-	1,499,800
학생지도영역	공통지표	657,055	-	657,055
	선택+지정선택지표	164,264	452,000	616,264
합계		4,406,894	486,500	4,893,394

○ 교직원현황(2015.8.1.자 기준)

구분	교원			직원				합계
	총장	전임교원	소계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소계	
인원	1	217	218	82	26	118	226	444

6.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실적물) 심사 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교육영역	교육활동계획서	8월		
	교육활동보고서	1월		
	선택지표이행실적	2월		
	지정선택지표	8월	2월	영어강의지원비 지원지침에 따름
연구영역	연구활동계획서 +기본연구계획서	8월		
	연구활동보고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1월		
	선택지표 이행실적	1월		
	지정선택지표	수시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규정에 따름
학생지도 영역	학생지도활동계획서	8월		
	학생지도활동보고서	1월		
	선택지표이행실적	1월		
	지정선택지표	8월	2월	

7. 지급시기

월별	1학기					2학기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구분					심사 및 지급				실적 보고 서	심사 및 지급	평가 차등 지급
교육					계획서 40%				○	40%	20%
연구					계획서 40%				○	40%	20%
학생 지도					계획서 40%				○	40%	20%

* 활동계획서 : 2015학년도(연간) 계획서를 제출

8. 평가집단

평가영역	평가점수 산출	비교집단	비고
교육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연구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학생지도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9. 기타사항

- 2015학년도는 교원은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연단위로 제출하고, 실적 평가는 1,2학기를 합산하며, 직원은 2015-2학기 실적만 인정함
 ※ 직원의 예산 편성은 1개 학기 기준임
- 학생지도 부분을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원 포함)의 공통적인 업무 범위로 인정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교육영역	전체 예산의 32.7%	

□ 교육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강의개선 활동비	1,130,310	- 강의책임시간 준수 -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 충족시 5,500 - 미달시 1학점당 1%씩 감액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286,465	- 학부강의평가점수 - 수업보조자료활용 - 학부학생수강인원	실적에 따라 4등급(S,A,B,C)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지정 선택 지표	교재개발비	70,000	연구년교수	200페이지 이상 시 5,000 1인 1과목(ISBN 등록) - 실적물(교재)은 심사하여 적격 판정시 지급 - 교재개발지원기준 별첨
	영어강의 지원비	99,000	영어강의지원비 지원 지침에 따름	- 영어강의지원비 - 3학점 과목 700 - 2학점 과목 500 - 교재개발비 : 500
계		1,585,775		

□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의무 제출		교육계획서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교육계획 제출	
		교육실적 보고서	교육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평 가 항 목	공 통 지 표	강의개선활동 (책임시수/CQI)	- 책임시수 준수 ※ 미달 시 1학점당 기준액의 1%씩 감액 - CQI(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 미제출 시 1학점당 기준액의 1%씩 감액	학사관리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선 택 지 표	① 학부 강의 평가 점수	- 4.5이상 5점, 4.0이상 4.5미만 4점, 3.5이상 4.0 미만 3점, 3.0이상 3.5미만 2점, 2.5이상 3.0미만 1점, 2.5미만 0점	교수지원팀
		② 수업보조자료활용	- 과목당 2점(학점무관) ex) PPT파일	개별 제출
		③ 학부 학생 수강 인원	- 1학점당 평균 수강인원 : 10명 미만 0점, 11~15명 1점, 16~20명 2점, 21~25명 3점, 26~30명 4점, 31명 이상 5점 ※ 평균수강인원 = $\frac{\sum \text{학점} * \text{수강인원}}{\text{총학점}}$	학사관리팀
	지 정 선 택 지 표	교재개발비	○ 지급대상 : 연구년교수 ○ 지급액 : 200페이지 이상 시 5,000천원 ¹⁾ - 1인 1과목(ISBN 등록) - 실적물(교재)은 심사하여 적격 판정 시 지급 ○ 교재개발비 지원기준 별첨	개별 제출
		영어강의지원비	○ 영어강의지원비(학기당) - 3학점 1강좌당 700천원 - 2학점 1강좌당 500천원 ○ 교재개발비 500천원(최초 강의시)	학사관리팀

<적요>

- 1학기는 책임시수 이행률만 평가
- 학생 수강인원 : 학부 과목 중 순수 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는 제외함
- 선택지표 : 학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차등지급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2점 미만
지급기준	1,644,000 ($\alpha \times 1.2$)	1,370,000 (α)	1,09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8월)	2차평가(2016.1월)	3차평가(2016.2월)
기준금액	6,870,000원		
공통지표	40%내	40%내	20%내
평가근거	○ 교육계획서(2015학년도)	○ 1,2학기 이행 실적	○ 교육실적(2015학년도)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교육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1,2학기 공통지표 달성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지급	- 1, 2학기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지급
확인자료	- 교육계획서 심사결과표	- 강의책임시간 준수 - CQI(교과목포트폴리오) 제출(2학기만 포함)	- 강의평가점수 - 수업보조자료활용 실적 - 학부생 수강인원

○ 평가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교육계획서, 교육실적 보고서, 강의개선활동
선택지표	0~20%	① ~ ③ 항목

2. 연구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41.6%	

□ 연구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기본연구 지원비	534,500	○ 기본연구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 2,300 ○ 정책연구과제 : 1,150
선택 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5,00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국내 학회 참가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교내학술 연구과제 지원비	1,193,200	교내일반과제, 중점과제, 지정연구과제, 신입교수 연구비로 구분	○ 일반과제 7,000 ○ 중점과제 10,000 ○ 신입교수 10,000
	논문게재 발표경비 지원비	133,600	연구논문 게재 · 발표경비	○ 게재 : 등재지 및 저자 수에 따라 60~100,000 ○ 발표 - 국내 100 - 국외 1,000
	국내학회 참가경비 지원비	36,000	국내학회 참가경비	1회 참가 200(연2회에 한함)
	대외연구 과제선정 장려금	12,000	한국연구재단에 신규과제 (연구비 총액 3천만원 이상) 가 선정된 경우 지원	과제당 300
계		2,034,300		

□ 평가지표

구분	항 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의무 제출	연구계획서 제출시		공통지표, 선택지표, 지정선택지표에 대한 연간 연구활동계획을 제출		개별 제출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실적을 제출		개별 제출
공통 지표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지급		개별 제출
선택 지표	①교외 연구비 수주		기본 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산학협력단 : (기간 중 입력자료)
	②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점/건		
	③저서(전문도서출판)		5점/건		
	④특허(실용신안) 출원		3점/건		
	⑤지식(디자인)재산권		2점/건		
	⑥기술이전		50만원당 1점		
	⑦국내 학회 참가		1점/건 ※ 3회차 참가부터 인정(증빙서류)		
지정 선택 지표	다년 과제	교내일반과제	건	700만원	개별 제출
		중점연구과제	건	1,000만원	
		신임교수연구과제	건	1,000만원	
	연구논문 게재경비		건	6~10,000만원	
	국내 학술대회 발표		건	10만원 (1회 3건까지)	
	국외 학술대회 발표		건	100만원	
	국내 학회 참가		건	20만원 (연간 2건까지)	
	대외 연구과제 선정		건	30만원	

<적요>

- 공통지표 기본연구 : 기존과제 및 교내과제 불가
- 선택지표 ②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 선택지표 ⑦ 국내 학회 참가는 2회까지는 지정선택에서 인정하고, 3회차부터는 선택지표에서 인정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1점 미만
지급액(원)	684,000 ($\alpha \times 1.2$)	570,000 (α)	45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연구계획서, 연구실적보고서, 기본연구계획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	0~20%	① ~ ⑦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 (8월)	2차평가 (2016.1월)	3차평가 (2016.2월)
기준금액	2,870,000원		
공통지표	40%내	40% 내	20%내
평가근거	연구계획서 (2015학년도)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후 차등 지급
확인자료	- 연구계획서 심사결과표	- 기본연구결과보고서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3. 학생지도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학생지도 분야	전체 예산의 25.7%	

□ 학생지도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학생면담실적	657,055	○ 학생면담실적	○ 면담실적에 따라 지급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164,264	○ 학생취업활동 ○ 학생비교과활동지원	○ 기준액 : 40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452,000	○ 학생활동지원	○ 1회 기준액 : 80 ○ 지도실적에 따라 지급
계		1,273,319		

□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의무 제출	계획서 제출	-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개별 제출
	보고서 제출	- 학생지도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개별 제출
평 가 항 목	공 통 지 표	- 학생면담 학기당 15회이상 : 1,600천원(학기) · 15회 미만 시 회당 1% 금액 감액 ※ 다만, 학기당 최소 5회 이상 학생면담 실시	기간중 원스톱 서비스 입력자료
	선 택 지	① 학생취업지도(취업지원본부에서 인정하는 실적) : 건당 1점	취업지원 본부
	학생 비교과	②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도서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표	활동 지원	: 평가건수당 0.5점	현장실습 교육센터
		③ 독서토론지도: - 지도학생수 11명 이상 3점 - 지도학생수 5~10명 2점 - 지도학생수 1~4명 1점	
		④ 현장실습지도: 건당 1점	
		⑤ 지도학생의 외부 경진대회 수상/참가실적 : 수상 건당 3점, 참가 건당 1점	
	학생활동지원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 참조 : 1점당 80,000원(최대 25점까지 인정) ※ 2015년도 2학기 기준임(연간 최대 50점)	일지 및 결과보고서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기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60%(기준)	하위20%	2점 미만
지급액(원)	480,000 ($\alpha \times 1.2$)	400,000 (α)	320,000 ($\alpha \times 0.8$)	0

- 교직원은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선택지표로 활용하여 실적으로 인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학생지도활동계획서, 학생지도활동보고서, 학생면담 실적
선택지표	0~20%	① ~ ⑤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 (8월)	2차평가 (2016.1월)	3차평가 (2016.2월)
기준금액	4,000,000원		
공통지표	40%내	40% 내	20%내
평가근거	학생지도활동계획서 (2015학년도)	학생지도활동보고서 (2015학년도)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학생지도활동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학생지도활동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확인자료	- 활동계획서 심사결과표	- 학생지도활동보고서	- 학생취업지도 -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독서토론지도 - 현장실습지도 - 지도학생의 외부경진 대회 수상 - 학생지도 실적

[별표 1]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공통 지표 또는 선택 지표	☐ 학생 학사 상담 또는 지도	○ 재학생 대상 수강신청, 휴·복학, 자퇴, 제적 등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과행사 상담 또는 지도	○ 학과 개강/종강, 세미나, 워크숍, 학과 MT 등 학과행사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안전지도·보호 활동 지도	○ 학생 보호(성폭력방지 등 야간방범활동, 실험실연구 안전, 교통 또는 주차지도 등) 활동 지도 - 전염병 예방 등 보건안전 활동 지도)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대학행사 학생지도 실적	○ 입학식/졸업식, 신입생 OT, 대동제 및 공학제, 성년의 날 등 대학행사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행사 임장지도	○ MT, 수련회, 농활, 학생 체육대회 등 학생 행사에 참여하여 임장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현장(교육)실습 지도	○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팀 코칭제 참여	○ 개인 또는 집단(부서) 단위로 학생들에게 업무지도,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코칭제를 실시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동아리 상담 또는 지도	○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취·창업 분야, 기술 분야, 학사 행정 민원 분야 등을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공모전/경연대회 등 각종대회 참가 학생활동 지도 실적	○ 학생들의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등 일정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 1회(건)당 2.0점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공모전/경연대회 참가 출력 결과 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확인서 등)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취업(창업) 지도 실적	○ 취업대상자(미취업 졸업자 포함)를 대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상으로 일정기간 지도한 실적 - 1회(건)당 1.0점	고서[취업(창업) 확인서 등]
	☐ 학생 멘토·멘티 운영 실적	○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 학생 수 1명당 2.0점 ※ 1개학기 기준(매주 1회이상 15회 기준)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K-CDP(학생종합역량 프로그램) 참여한 실적	○ K-CDP(학생종합역량)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1개학기이상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2016학년도부터 시행) - 1회(건)당 15.0점 ※ 학생수, 추진방법 등은 추후 결정	K-CDP센터의 관련 공문 및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실적		
	※ 배점 산출방법 ○ 개인별 배점은 해당부서의 공문,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등 실제 참여한 시간(일)을 기준으로 산정. ○ 배점기준 - 1회(건) : 4시간이하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은 1.0점 인정 ☞ 1일 3회(건) 한도 - 1일 : 4시간이상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은 1.5점 인정 예) 학과 MT 1박2일 경우 : 교직원이 임장지도로 활동 실적인정 : 2일 3.0점으로 인정함. ○ 배점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교육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책임시간 준수 여부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부강의 평가점수	
	☐ 수업보조 자료활용	수업보조자료활용에 대한 계획 작성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계획을 작성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교육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책임시간 준수 여부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실적
선택지표	☐ 학부강의 평가점수	강의평가 점수 기재
	☐ 수업보조 자료활용	수업보조자료활용에 대한 실적 작성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실적을 작성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 기준

1. 지원대상자 : 2015. 3월 현재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2014.9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포함함)
2. 교재의 범위 : 전공분야에 한하며, 개발된 교재는 학생의 정규강좌 또는 비정규강좌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지원절차
 - 교육영역 활동계획서에 교재개발을 선택하고 개발 내용을 기재
 - 붙임 양식의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후 대상자 확정
4. 교재의 규격
 - A4용지 기준 200매 이상, 글자크기 12포인트 이하, 쪽번호 삽입, 한글파일 형태, 그림·사진의 지나친 삽입 지양
5. 비용지급
 - 교재개발비 지원 금액은 금5,000,000원으로 한다.
 - 교재개발 비용은 2016.2월말까지 지급하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교재 제출기한(유예기간 포함)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6. 의무사항
 - 완성된 교육교재는 ISBN을 부여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된 교재는 전공분야 정규강좌 및 비정규강좌에 교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7.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교육교재 5부, 최종결과보고서(별지 2호)를 교무처에 제출
 - 연구년 승인 교수의 연구년 기간에 따른 결과물 제출 시기

연구년기간	교재개발기간	교재개발비(천원)	지급일	교재제출기한	비고
2014.9~2015.8	2015.9~2016.1	5,000	2016.2.	2016.1.31. 단, 2015년에는 완성본 제출시기를 6개월까지 유예	유예신청시 중간보고서 제출
2015.3~2016.2	2015.9~2016.1	5,000	2016.2		
2015.9~2016.8	2015.9~2016.1	5,000	2016.2		
2016.3~2017.2	대상아님				2016년 신청

8. 심사
 - 개발된 교재는 규격, 전공분야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교재개발의 적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 별첨
 - [별첨 1]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 [별첨 2]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

[별첨1]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관리번호	
교 재 명			관련 강의명	
개발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급	
개 발 경 비	원	개발기간	(개월)	
본인은 2015년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교재개발 수행 계획서 1부. 2015 년 월 일 개 발 책 임 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수행계획서

1. 교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4. 활용방안

예:○○○학부(과)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강의교재로 활용

5. 추진 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6. 소요예산

지 출 항 목	금 액 (원)	산 출 내 역
교재집필비	5,000,000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교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결과보고서

1. 교재개발의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
-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교재”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계획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계획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 택 지 표	☐ 교외 연구과제 수행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계획	
	☐ 특허(실용신안) 출원	예) 특허 몇 건 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 국내 학회 참가	예) 국내 학회 참가 계획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계획서를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계획서 1부. 제출자 : (소속) 2015년 월 일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기본연구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기타 사항	

<붙임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연구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기간	2015. . . ~ 2015. . .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타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실적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실적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 택 지 표	☐ 교외 연구과제 수행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결과 제출	
	☐ 특허(실용신안) 출원	예) 특허 몇 건 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 국내 학회 참가	예) 국내 학회 참가 횟수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실적을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계획서 1부.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결과보고서 : 별첨>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결과 보고서 1부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 작성요령 안내

1. 연구내용 및 결과는 3쪽 내외로 간략히 정리
2. 각 항목의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기술
3. 작성후에는 작성요령 안내 박스를 제거 후 제출

I.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개요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2. 국내외 연구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학문 또는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등을 기술

6. 연구결과물

※ 여타 논문집의 논문 형태로 작성 예) 제목, 저자, 초록, 본문내용, 참고자료

<붙임2>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연구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참고 및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계획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계획을 작성
	☐ 전국규모 이상 경진대회 수상	지도학생 전국단위 경진대회 지도 계획을 작성
지정선택 지표	☐ 학생지도	학생 지도 운영 계획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실적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실적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실적을 작성
	☐ 전국규모 이상 경진대회 수상	학생 경진대회 수상실적을 작성
	☐ 학생지도	학생 지도 운영 실적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IV 행정사항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제5조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심의사항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심사 및 개인별 지급액 결정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 위원 구성(안)

구 분	소속	직위(급)	성명	임명기간
위원장	교무처	교무처장	이재원	당연직
위 원	학생처	학생처장	방대석	당연직
위 원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승희	당연직
위 원	사무국	사무국장	박성수	당연직
위 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곽호상	당연직
위 원	전자공학부	교수	안희욱	2015.8.1.~2016.2.29
위 원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영학	2015.8.1.~2016.2.29
위 원	신소재공학부	교수	노재승	2015.8.1.~2016.2.29
위 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조현걸	2015.8.1.~2016.2.29
위 원	학생처	학생과장	김종필	2015.8.1.~2016.2.29
위 원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팀장	천병광	2015.8.1.~2016.2.29
계			11명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업무 분담

부서명	주요업무	세부업무
교무처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하 “비용”) 지급 업무 총괄 - 비용 지급 관련 대내외 업무 조정	- 교육부 공문 접수 및 보고 - 비용 지급규정 제·개정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전임교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학생처	직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K-CDP 센터	K-CDP시스템 활용	- K-CDP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직원은 학생 진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사무국 (재정정책팀)	예·결산 및 예산배정	- 비용에 대한 예산 및 결산(공고) - 재정위원회 심의 - 예산배정
정보전산원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교원업적평가 자료 연계 · K-CDP센터 자료 연계 · 기타 개인별 실적자료 입력 프로그램
종합학사 행정실	전임교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각 부서	직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추가경정예산 개요

□ 추가경정 예산 편성

- 1차 추경의 세입은 2015년도 본예산 세입 25,107,358천원에 산단 회계 전입금 640,710천원, 근로장학금 보조금 590,200천원, 기성 회계 청산예정액 400,000천원을 합하여 26,738,268천원으로 1,630,91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 추경의 세출은 교원 인사제도 혁신 TF운영사업 11,000천원, 교육 연구 및 학생활동 지도비 416,973천원, 국가근로장학금 590,200천원,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설계용역비 610,710천원, 중소·중견 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사업 대응자금 30,0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7,973천원을 감액하여 1,630,91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도비 교원분을 당초 2,993,776천원에서 2,933,094천원으로 60,682천원 감액 편성
 - ※ 교원 연구비 전년도 결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도비 직원분은 477,655천원으로 편성
 - ※ 학생처에서 486,5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477,655천원만 편성

□ 세출예산 과목 변경

[과목성격을 고려하여 과목변경]

- 교무처 영어강의지원비 : 예산액 99,000천원
[강의료→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
- 산학협력단 영어논문교정비 : 예산액 15,000천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연구개발비]

- 산학협력단 학술대회지원비 : 예산액 9,000천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교육부의 교수.직원, 연구비 통합관리 방침에 의하여 당초 본예산 4,392,576천원 보다 491,973천원 많은 4,884,549천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편성내용

(단위 : 천원)

산출내역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교)교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2,993,776	2,933,094	▲60,682
(교)영어강의지원비(교재개발비포함)	0	99,000	99,000
(학)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0	477,655	477,655
(산)대학학술연구비지원	1,193,200	1,193,200	0
(산)연구게재발표경비	133,600	133,600	0
(산)연구과제신청장려금	12,000	12,000	0
(산)학술행사지원비	60,000	36,000	▲24,000
계	4,392,576	4,884,549	491,973

※ (교):교무처, (학):학생처, (산):산학협력단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예산 총괄내역

(단위 : 천원)

본예산(A)	추경예산(B)	증감액(B-A)	비고
25,107,358	26,738,268	1,630,910	○ 산단회계 전입금(640,710천원) ○ 근로장학금 보조금(590,200천원) ○ 기성회계 청산액(400,000천원)

※ 수입대체경비 예산 제외(변동 없음)

나.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본예산(A)	추경예산(B)	증감액(B-A)	비고
교육활동수입	24,819,358	24,819,358	-	○입학금,수업료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640,710	640,710	○산단회계 전입금(640,710천원)
이자수입	80,000	80,000	-	○예금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	208,000	1,198,200	990,200	○ 근로장학금 보조금(590,200천원) ○ 기성회계 청산예산액(400,000천원)
합 계	25,107,358	26,738,268	1,630,910	

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A)	추경예산(B)	증감액(B-A)	비고
교무처	교원 인사제도 혁신 TF운영 사업	-	11,000	11,000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도비 (교원)	2,993,776	2,933,094	△ 60,682	전년도 결산액으로 예산편성
학생처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도비 (직원)	-	477,655	477,655	
	2015년도 국가근로장학금	-	590,200	590,200	보조금
사무국 (시설)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설계용역비	-	610,710	610,710	산단회계 전입금
산 학 협력단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지원사업 대응자금	-	30,000	30,000	산단회계 전입금
사무국	예비비	27,973	-	△ 27,973	
전부서	-	22,085,609	22,085,609	-	
계		25,107,358	26,738,268	1,630,910	

3. 세출예산 과목 변경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당초	변경		
교무처	영어강의지원비 (교재개발비포함)	강의료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99,000	과목성격을 고려하여 과목변경
산학협력단	영어논문교정비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연구개발비	15,000	
	학술대회지원비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교육훈련/세 미나/워크숍	9,000	

대학회계 1차 추가경정세출예산 세부내역

2015. 8. 20.

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2015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편성 [본예산-과목변경]

산출내역	금 액	예산과목		비고
		당초	변경	
1. 영어강의지원비 및 교재개발비(교무처)	99,000	강의로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예산 산출내역 성격고려 과목변경
2. 학술행사지원 영어논문교정비(산학협력단)	15,000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연구개발비	예산 산출내역 성격고려 과목변경
3. 학술대회지원비(산학협력단)	9,000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교육훈련/세미나/ 워크숍	예산 산출내역 성격고려 과목변경

2.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2015. 8. 20.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I. 심의 개요

- 2015. 8. 20(목) 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이승희 위원, 박성수 위원, 정연구 위원,
김종필 위원, 최낙렬 위원, 구정호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제3호 안건을 심의함

II. 심의 결과

- 제3호 안건인 2015학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원안대로 심의함

3. 부 의 안 건

2015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2015. 8. 20

금오공과대학교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변경 내용

	최초 안	변경 안																														
1	지급대상 : 전임교원 ※ 직원(조교 포함)은 별도 수립	지급대상 : 교직원 ※ 직원(조교, 대학회계직원 포함) 예산 편성																														
2	예산총액 : 2,992,358천원 ※ 전임교원에 대한 예산만 편성 - 산출근거 <table><tr><td>직급</td><td>지급액 (연액)</td><td>인원 (`15.4.1 기준)</td><td>소요예산</td></tr><tr><td>총장</td><td>17,160</td><td>1</td><td>17,160</td></tr><tr><td>교수</td><td>14,450</td><td>156</td><td>2,254,200</td></tr><tr><td>부교수</td><td>12,470</td><td>23</td><td>286,810</td></tr><tr><td>조교수</td><td>11,426</td><td>38</td><td>434,188</td></tr><tr><td>계</td><td></td><td>218</td><td>2,992,358</td></tr></table>	직급	지급액 (연액)	인원 (`15.4.1 기준)	소요예산	총장	17,160	1	17,160	교수	14,450	156	2,254,200	부교수	12,470	23	286,810	조교수	11,426	38	434,188	계		218	2,992,358	예산총액 : 4,893,394천원 ○ 교원 2,933,094천원(2014년도 결산액) ○ 직원 486,500천원 ○ 교내 학술연구지원비 1,374,800천원 ○ 영어강의지원비 99,000천원 ※ 교원 예산 산출근거 - 교원(총장포함) 2014년도 연구보조비 결산금액 : 2,933,094천원						
직급	지급액 (연액)	인원 (`15.4.1 기준)	소요예산																													
총장	17,160	1	17,160																													
교수	14,450	156	2,254,200																													
부교수	12,470	23	286,810																													
조교수	11,426	38	434,188																													
계		218	2,992,358																													
3	지급비율 교육:연구:학생 = 50:20:30	교육:연구:학생 = 32.4:41.6:26.0 ※ 영어강의지원비, 교내 학술연구비 및 직원예산 포함. 전임교원의 지급비율은 동일																														
4	선택지표 차등지급률 <table><tr><td>구분</td><td>S</td><td>A</td><td>B</td><td>C</td></tr><tr><td>인원</td><td>5%</td><td>90%</td><td>5%</td><td></td></tr><tr><td>금액</td><td>105%</td><td>100%</td><td>95%</td><td>무</td></tr></table>	구분	S	A	B	C	인원	5%	90%	5%		금액	105%	100%	95%	무	선택지표 차등지급률 <table><tr><td>구분</td><td>S</td><td>A</td><td>B</td><td>C</td></tr><tr><td>인원</td><td>20%</td><td>60%</td><td>20%</td><td></td></tr><tr><td>금액</td><td>120%</td><td>100%</td><td>80%</td><td>무</td></tr></table> ※ B등급의 최저점수 부여	구분	S	A	B	C	인원	20%	60%	20%		금액	120%	100%	80%	무
구분	S	A	B	C																												
인원	5%	90%	5%																													
금액	105%	100%	95%	무																												
구분	S	A	B	C																												
인원	20%	60%	20%																													
금액	120%	100%	80%	무																												
5	교육 및 학생지도영역 총장 지표 반영	삭제																														
6	연구년 교수에 대한 적용 교육:연구:학생 = 20:50:30	연구년 교수는 교육영역의 교재개발비(신설) 및 연구영역만 지급 가능																														
7	지급계획(총칙부분) 기본원칙, 예산현황, 기타사항으로 구분	지급계획(총칙부분) 내용 추가 기본원칙, 지급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제한 및 환수, 예산 및 교직원 현황,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실적물) 심사 시기, 지급시기, 평가집단, 기타사항으로 구분																														

[교육영역]

필수 지표	기존안	강의개선활동: 강의평가
	변경안	강의개선활동: 책임시수 준수, CQI 제출 ※ 미달시, 1학점당 1% 감액

선택 지표	기존안	포트폴리오, 책임시수, 학부학생 수강인원
	변경안	학부강의평가점수, 수업보조자료활용, 학부학생 수강인원

지정 선택	기존안	무
	변경안	교재개발비 신설 : 연구년 교수 대상 영어강의 지원비(별도 예산)

[연구영역]

※ 산학/비산학 구분 -> 동일

필수 지표	기존안	기본연구과제
	변경안	기본연구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중 택 1

선택 지표	기존안	교외연구과제 연구비, 학회학술논문발표, 학회참가, 기술이전, 특허, ※연구협의-심의-검정-평가 항목 삭제
	변경안	교외연구과제 연구비, 학술대회발표(4회부터), 학회참가(3회부터), 전문도서출판 저서, 기술이전, 특허, 지식(디자인)재산권

지정 선택 (별도 예산)	기존안	무
	변경안	○ 산학협력단 교내연구비 예산 합산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비, 논문게재발표경비 지원비, 국내학회참가 경비 지원비, 대외연구과제 선정 장려금(지원한 경우->선정된 경우)

[학생영역]

필수 지표	기준안	학생면담 : 최소 5회이상
	변경안	학생면담 학기당 20회 이상(2015년은 연 40회 이상) 20회 미만 시 1회당 8만원 감액
선택 지표	기준안	학생취업활동, 학생 비교과활동 지원
	변경안	변동없음
지정선택 지표	기준안	무
	변경안	학생활동지원실적 1점당 80,000원(학기당 최대 25점까지 인정) ※ 학생지도 실적 인정기준표 별도 첨부

2015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I 관련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

II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1. 목적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영역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 2015학년도에 대학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관련 예산은 모두 포함하되, 공통지표와 선택지표 및 지정선택지표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공통지표(80%) : 학기별 40%내에서 지급
- 선택지표(2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0~20%)
- 지정선택지표

- 영어강의지원비, 지정선택지표(연구영역) :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교재개발비, 학생활동지원비 : 본 계획 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라. 2015학년도는 각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연간 계획으로 제출받으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영역은 8월과 익년도 1월에 각각 40%, 학년말에 20%를 지급한다.

마. 선택지표에 대한 실적평가는 4단계(S,A,B,C)로 구분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C등급을 부여하여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휴직, 파견, 직위해제중인 자(해당 기간)
-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해당 분야 실적이 전혀 없거나, 최저점수 이하인 자

3. 실적 평가기준

- 가. 매년도 3월 1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학년말에는 실적인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각 영역별 실적은 해당 부서의 실적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실적자료가 없는 항목은 개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4. 담당부서

- 가. 영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자료제출부서에서는 실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 가.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 나. 실적평가지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 다.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지급된 비용
- 라.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 마.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시행일

- 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은 2015.3.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 포함)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1개 학기 기준 평가기간 예산이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 기본원칙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준수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활동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 계획서의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
- 비용 선지급급에 따른 환수 기준 명시
- K-CDP시스템에 기반한 학생 종합역량 자료 제출(전 영역 반영 가능)

2.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금오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자
- (지급 제외 대상자)
 - 휴가, 휴직, 파견, 신규임용, 직위해제중인 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에 학기별 1월 미만, 연구영역의 경우에는 연 2월 미만인 자
 -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7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에 따라 면직된 교직원
- (지급 제한 대상자)
 - 정년퇴직, 명예퇴직 대상 교직원은 퇴직 전 영역별 활동계획서와 영역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영역별 해당 비용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전액(기준액) 일시 지급함
 - 연구년제 교수 및 파견 중인 교직원의 경우 강의교재개발을 제외한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 영역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단, 강의교재개발 및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지급)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 (구성) 교무처장(위원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이 외 일반직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활동계획서, 실적 보고서 심사, 개인별 지급액 결정 및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의신청)
 - 비용 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제기기간 내 이의를 제기한 교직원이 없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별 비용 지급내역을 교무처 및 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영역별 비용 신청 및 지급 관련 증빙자료는 교무처 및 학생처에서 5년 이상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지급 제한 및 환수

- (처리방안) 지급 제한 및 환수 처리 방안

구 분	조 치	비 고
휴직 및 징계	- 해당기간 영역별 실적 불인정	·일할, 월할계산 등 지급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 최하등급 부여	·합당한 사유 시 재심의
보고서 미제출	- 선지급분 회수 - 잔여액 미지급	·타 영역 비용 미지급
실적물 허위제출	- 선지급분 전액 환수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전액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 지급된 비용 전액 환수 조치
 - 활동계획서 제출로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미제출 시
 -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없이 본인의 원(願) 또는 중징계(해임, 파면)에 따른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 적발 시

- 동일한 실적물에 대하여 이중 지급된 경우
- **(환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적보고서(실적물)를 제출하지 못한 교직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당 영역 선지급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유예 가능함
 -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최대 2개월 연장)
 - 천재지변, 전사·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환수면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환수방안)** 환수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환수금액 완납완료 시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중지
 - 차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서 환수금액 차감

5. 예산 및 교직원 현황

- 예산과목 : 대학회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 총 예 산 : 4,893,394천원

영역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1인당 기준액
교육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지원비	1,130,310	5,500
	선택지표	교육활동지원비	286,465	1,370
	지정선택지표	교재개발비	70,000	
	지정선택지표	영어강의지원비	99,000	
	계(A)		1,585,775	6,870
연구	공통지표	기본연구지원비(기본/정책)	534,500	2,300/1,150
	선택지표	연구활동지원비	125,000	570
	지정선택지표	교내학술연구과제지원비	1,193,200	
		논문게재발표경비지원비	133,600	
		학회참가경비지원	36,000	
		대외연구과제선정장려금	12,000	
		소계	1,374,800	

영역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1인당 기준액
	계(B)		2,034,300	
학생 지도	공통지표	학생지도지원비	657,055	3,200
	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취업, 비교과)	164,264	800
	지정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취업비교과외)	452,000	2,000
	계(C)	소계	1,273,319	
합계(A+B+C)			4,893,394	

○ 세부현황

영역	구분	교원	직원	합계
교육영역	공통지표	1,130,310	-	1,130,310
	선택+지정선택지표	455,465	-	455,465
연구영역	공통지표	500,000	34,500	534,500
	선택+지정선택지표	1,499,800	-	1,499,800
학생지도영역	공통지표	657,055	-	657,055
	선택+지정선택지표	164,264	452,000	616,264
합계		4,406,894	486,500	4,893,394

○ 교직원현황(2015.8.1.자 기준)

구분	교원			직원				합계
인원	총장	전임교원	소계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소계	
	1	217	218	82	26	118	226	444

6.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실적물) 심사 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교육영역	교육활동계획서	8월		
	교육활동보고서	1월		
	선택지표이행실적	2월		
	지정선택지표	8월	2월	영어강의지원비 지원지침에 따름
연구영역	연구활동계획서 +기본연구계획서	8월		
	연구활동보고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1월		
	선택지표 이행실적	1월		
	지정선택지표	수시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규정에 따름
학생지도 영역	학생지도활동계획서	8월		
	학생지도활동보고서	1월		
	선택지표이행실적	1월		
	지정선택지표	8월	2월	

7. 지급시기

월별	1학기					2학기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구분					심사 및 지급				실적 보고 서	심사 및 지급	평가 차등 지급
교육					계획서 40%				○	40%	20%
연구					계획서 40%				○	40%	20%
학생 지도					계획서 40%				○	40%	20%

* 활동계획서 : 2015학년도(연간) 계획서를 제출

8. 평가집단

평가영역	평가점수 산출	비교집단	비고
교육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연구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학생지도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9. 기타사항

- 2015학년도는 교원은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연단위로 제출하고, 실적 평가는 1,2학기를 합산하며, 직원은 2015-2학기 실적만 인정함
 - ※ 직원의 예산 편성은 1개 학기 기준임
- 학생지도 부분을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원 포함)의 공통적인 업무 범위로 인정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32.7%	

□ 교육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강의개선 활동비	1,130,310	- 강의책임시간 준수 -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 충족시 5,500 - 미달시 1학점당 1%씩 감액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286,465	- 학부강의평가점수 - 수업보조자료활용 - 학부학생수강인원	실적에 따라 4등급(S,A,B,C)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지정 선택	교재개발비	70,000	연구년교수	200페이지 이상 시 5,000 1인 1과목(ISBN 등록) - 실적물(교재)은 심사하여 적격 판정시 지급 - 교재개발지원기준 별첨
	영어강의 지원비	99,000	영어강의지원비 지원 지침에 따름	- 영어강의지원비 - 3학점 과목 700 - 2학점 과목 500 - 교재개발비 : 500
계		1,585,775		

□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의무 제출		교육계획서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교육계획 제출	
		교육실적 보고서	교육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평 가 항 목	공 통 지 표	강의개선활동 (책임시수/CQI)	- 책임시수 준수 ※ 미달 시 1학점당 기준액의 1%씩 감액 - CQI(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 미제출 시 1학점당 기준액의 1%씩 감액	학사관리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선 택 지 표	① 학부 강의 평가 점수	- 4.5이상 5점, 4.0이상 4.5미만 4점, 3.5이상 4.0 미만 3점, 3.0이상 3.5미만 2점, 2.5이상 3.0미만 1점, 2.5미만 0점	교수지원팀
		② 수업보조자료활용	- 과목당 2점(학점무관) ex) PPT파일	개별 제출
		③ 학부 학생 수강 인원	- 1학점당 평균 수강인원 : 10명 미만 0점, 11~15명 1점, 16~20명 2점, 21~25명 3점, 26~30명 4점, 31명 이상 5점 ※ 평균수강인원 = $\frac{\sum \text{학점} * \text{수강인원}}{\text{총학점}}$	학사관리팀
	지 정 선 택 지 표	교재개발비	○ 지급대상 : 연구년교수 ○ 지급액 : 200페이지 이상 시 5,000천원 ²⁾ - 1인 1과목(ISBN 등록) - 실적물(교재)은 심사하여 적격 판정 시 지급 ○ 교재개발비 지원기준 별첨	개별 제출
		영어강의지원비	○ 영어강의지원비(학기당) - 3학점 1강좌당 700천원 - 2학점 1강좌당 500천원 ○ 교재개발비 500천원(최초 강의시)	학사관리팀

<적요>

- 1학기는 책임시수 이행률만 평가
- 학생 수강인원 : 학부 과목 중 순수 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는 제외함
- 선택지표 : 학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차등지급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2점 미만
지급기준	1,644,000 ($\alpha \times 1.2$)	1,370,000 (α)	1,09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8월)	2차평가(2016.1월)	3차평가(2016.2월)
기준금액	6,870,000원		
공통지표	40%내	40%내	20%내
평가근거	○ 교육계획서(2015학년도)	○ 1,2학기 이행 실적	○ 교육실적(2015학년도)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교육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1,2학기 공통지표 달성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지급	- 1, 2학기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지급
확인자료	- 교육계획서 심사결과표	- 강의책임시간 준수 - CQI(교과목포트폴리오) 제출(2학기만 포함)	- 강의평가점수 - 수업보조자료활용 실적 - 학부생 수강인원

○ 평가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교육계획서, 교육실적 보고서, 강의개선활동
선택지표	0~20%	① ~ ③ 항목

2. 연구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41.6%	

□ 연구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기본연구 지원비	534,500	○ 기본연구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 2,300 ○ 정책연구과제 : 1,150
선택 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5,00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국내 학회 참가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교내학술 연구과제 지원비	1,193,200	교내일반과제, 중점과제, 지정연구과제, 신입교수 연구비로 구분	○ 일반과제 7,000 ○ 중점과제 10,000 ○ 신입교수 10,000
	논문게재 발표경비 지원비	133,600	연구논문 게재·발표경비	○ 게재 : 등재지 및 저자 수에 따라 60~100,000 ○ 발표 - 국내 100 - 국외 1,000
	국내학회 참가경비 지원비	36,000	국내학회 참가경비	1회 참가 200(연2회에 한함)
	대외연구 과제선정 장려금	12,000	한국연구재단에 신규과제 (연구비 총액 3천만원 이상) 가 선정된 경우 지원	과제당 300
계		2,034,300		

□ 평가지표

구분	항 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의무 제출	연구계획서 제출시		공통지표, 선택지표, 지정선택지표에 대한 연간 연구활동계획을 제출		개별 제출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실적을 제출		개별 제출
공통 지표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지급		개별 제출
선택 지표	①교외 연구비 수주		기본 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산학협력단 : (기간 중 입력자료)
	②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점/건		
	③저서(전문도서출판)		5점/건		
	④특허(실용신안) 출원		3점/건		
	⑤지식(디자인)재산권		2점/건		
	⑥기술이전		50만원당 1점		
	⑦국내 학회 참가		1점/건 ※ 3회차 참가부터 인정(증빙서류)		
지정 선택 지표	다년 과제	교내일반과제	건	700만원	개별 제출
		중점연구과제	건	1,000만원	
		신임교수연구과제	건	1,000만원	
	연구논문 게재경비		건	6~10,000만원	
	국내 학술대회 발표		건	10만원 (1회 3건까지)	
	국외 학술대회 발표		건	100만원	
	국내 학회 참가		건	20만원 (연간 2건까지)	
	대외 연구과제 선정		건	30만원	

<적요>

- 공통지표 기본연구 : 기존과제 및 교내과제 불가
- 선택지표 ① 동일학회(동일시기 및 장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
- 선택지표 ⑦ 국내 학회 참가는 2회까지는 지정선택에서 인정하고, 3회차부터는 선택지표에서 인정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1점 미만
지급액(원)	684,000 ($\alpha \times 1.2$)	570,000 (α)	45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연구계획서, 연구실적보고서, 기본연구계획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	0~20%	① ~ ⑦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 (8월)	2차평가 (2016.1월)	3차평가 (2016.2월)
기준금액	2,870,000원		
공통지표	40%내	40% 내	20%내
평가근거	연구계획서 (2015학년도)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후 차등 지급
확인자료	- 연구계획서 심사결과표	- 기본연구결과보고서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3. 학생지도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학생지도 분야	전체 예산의 25.7%	

□ 학생지도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학생면담실적	657,055	○ 학생면담실적	○ 면담실적에 따라 지급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164,264	○ 학생취업활동 ○ 학생비교과활동지원	○ 기준액 : 40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452,000	○ 학생활동지원	○ 1회 기준액 : 80 ○ 지도실적에 따라 지급
계		1,273,319		

□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의무 제출	계획서 제출	-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개별 제출
	보고서 제출	- 학생지도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개별 제출
평 가 항 목	공 통 지 표	- 학생면담 학기당 20회이상 : 1,600천원(학기) · 20회미만 시 회당 80,000원 감액 ※ 2015년도 연 40회이상	기간중 원스톱 서비스 입력자료
선택 지	학생취업활동	① 학생취업지도(취업지원본부에서 인정하는 실적) : 건당 1점	취업지원 본부
	학생 비교과	②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도서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표	활동 지원	: 평가건수당 0.5점	현장실습 교육센터
		③ 독서토론지도: - 지도학생수 11명 이상 3점 - 지도학생수 5~10명 2점 - 지도학생수 1~4명 1점	
		④ 현장실습지도: 건당 1점	
		⑤ 지도학생의 외부 경진대회 수상/참가실적 : 수상 건당 3점, 참가 건당 1점	
	지 정 선 택 지 표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 참조 : 1점당 80,000원(최대 25점까지 인정) ※ 2015년도 2학기 기준임(연간 최대 50점)	일지 및 결과보고서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기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60%(기준)	하위20%	2점 미만
지급액(원)	480,000 ($\alpha \times 1.2$)	400,000 (α)	320,000 ($\alpha \times 0.8$)	0

- 교직원은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선택지표로 활용하여 실적으로 인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학생지도활동계획서, 학생지도활동보고서, 학생면담 실적
선택지표	0~20%	① ~ ⑤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 (8월)	2차평가 (2016.1월)	3차평가 (2016.2월)
기준금액	4,000,000원		
공통지표	40%내	40% 내	20%내
평가근거	학생지도활동계획서 (2015학년도)	학생지도활동보고서 (2015학년도)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학생지도활동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학생지도활동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확인자료	- 활동계획서 심사결과표	- 학생지도활동보고서	- 학생취업지도 -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독서토론지도 - 현장실습지도 - 지도학생의 외부경진 대회 수상 - 학생지도 실적

[별표 1]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공통 지표 또는 선택 지표	☐ 학생 학사 상담 또는 지도	○ 재학생 대상 수강신청, 휴·복학, 자퇴, 제적 등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과행사 상담 또는 지도	○ 학과 개강/종강, 세미나, 워크숍, 학과 MT 등 학과행사 상담 또는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안전지도·보호 활동 지도	○ 학생 보호(성폭력방지 등 야간방범활동, 실험실연구 안전, 교통 또는 주차지도 등) 활동 지도 - 전염병 예방 등 보건안전 활동 지도)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대학행사 학생지도 실적	○ 입학식/졸업식, 신입생 OT, 대동제 및 공학제, 성년의 날 등 대학행사 지도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행사 임장지도	○ MT, 수련회, 농활, 학생 체육대회 등 학생 행사에 참여하여 임장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현장(교육)실습 지도	○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팀 코칭제 참여	○ 개인 또는 집단(부서) 단위로 학생들에게 업무지도,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코칭제를 실시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동아리 상담 또는 지도	○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취·창업 분야, 기술 분야, 학사 행정 민원 분야 등을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학생 공모전/경연대회 등 각종대회 참가 학생활동 지도 실적	○ 학생들의 공모전/경연대회 참가 등 일정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 1회(건)당 2.0점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공모전/경연대회 참가 출력 결과 보고서, 공모전/경연대회 확인서 등)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 “배점 산출 방법” 참조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취업(창업) 지도 실적	○ 취업대상자(미취업 졸업자 포함)를 대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구분	항 목	배점 및 평가 방식	제출자료
		상으로 일정기간 지도한 실적 - 1회(건)당 1.0점	고서[취업(창업) 확인서 등]
	☐ 학생 멘토·멘티 운영 실적	○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 학생 수 1명당 2.0점 ※ 1개학기 기준(매주 1회이상 15회 기준)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K-CDP(학생종합역량 프로그램) 참여한 실적	○ K-CDP(학생종합역량)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1개학기이상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2016학년도부터 시행) - 1회(건)당 15.0점 ※ 학생수, 추진방법 등은 추후 결정	K-CDP센터의 관련 공문 및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실적		
	※ 배점 산출방법 ○ 개인별 배점은 해당부서의 공문, 일지 또는 결과보고서 등 실제 참여한 시간(일)을 기준으로 산정. ○ 배점기준 - 1회(건) : 4시간이하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은 1.0점 인정 ☞ 1일 3회(건) 한도 - 1일 : 4시간이상 상담 또는 지도한 실적은 1.5점 인정 예) 학과 MT 1박2일 경우 : 교직원이 임장지도로 활동 실적인정 : 2일 3.0점으로 인정함. ○ 배점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교육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책임시간 준수 여부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부강의 평가점수	
	☐ 수업보조 자료활용	수업보조자료활용에 대한 계획 작성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계획을 작성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교육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책임시간 준수 여부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실적
선택지표	☐ 학부강의 평가점수	강의평가 점수 기재
	☐ 수업보조 자료활용	수업보조자료활용에 대한 실적 작성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실적을 작성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 기준

1. 지원대상자 : 2015. 3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2014.9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포함함)
2. 교재의 범위 : 전공분야에 한하며, 개발된 교재는 학생의 정규강좌 또는 비정규강좌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지원절차
 - 교육영역 활동계획서에 교재개발을 선택하고 개발 내용을 기재
 - 붙임 양식의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후 대상자 확정
4. 교재의 규격
 - A4용지 기준 200매 이상, 글자크기 12포인트 이하, 쪽번호 삽입, 한글파일 형태, 그림·사진의 지나친 삽입 지양
5. 비용지급
 - 교재개발비 지원 금액은 금5,000,000원으로 한다.
 - 교재개발 비용은 2016.2월말까지 지급하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교재 제출기한(유예기간 포함)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6. 의무사항
 - 완성된 교육교재는 ISBN을 부여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된 교재는 전공분야 정규강좌 및 비정규강좌에 교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7.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교육교재 5부, 최종결과보고서(별지 2호)를 교무처에 제출
 - 연구년 승인 교수의 연구년 기간에 따른 결과물 제출 시기

연구년기간	교재개발기간	교재개발비(천원)	지급일	교재제출기한	비고
2014.9~2015.8	2015.9~2016.1	5,000	2016.2.	2016.1.31. 단, 2015년에는 완성본 제출시기를 6개월까지 유예	유예신청시 중간보고서 제출
2015.3~2016.2	2015.9~2016.1	5,000	2016.2		
2015.9~2016.8	2015.9~2016.1	5,000	2016.2		
2016.3~2017.2	대상아님				2016년 신청

8. 심사
 - 개발된 교재는 규격, 전공분야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교재개발의 적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 별첨
 - [별첨 1]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 [별첨 2]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

[별첨1]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관리번호		
교 재 명				관련 강의명				
개발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급		
개 발 경 비		원		개발기간		(개월)		
본인은 2015년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교재개발 수행 계획서 1부. 2015 년 월 일 개 발 책 임 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수행계획서

1. 교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4. 활용방안

예:○○○학부(과)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강의교재로 활용

5. 추진 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6. 소요예산

지 출 항 목	금 액 (원)	산 출 내 역
교재집필비	5,000,000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교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첨 2]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

			관리번호	
교 재 명			관련 강의명	
개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개 발 경 비	원		개발기간	(개월)
본인은 2015년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결과보고서 1부. 첨부1. 개발 교과목 제본 5부 20 년 월 일 개 발 책 임 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결과보고서

1. 교재개발의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
-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수행된 교재”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계획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계획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 택 지 표	☐ 교외 연구과제 수행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계획	
	☐ 특허(실용신안) 출원	예) 특허 몇 건 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 국내 학회 참가	예) 국내 학회 참가 계획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계획서를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계획서 1부.			
		2015년 월 일 (성명)	일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기본연구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기타 사항	

<붙임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연구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기간	2015. . . ~ 2015. . .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타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실적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실적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 택 지 표	☐ 교외 연구과제 수행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결과 제출	
	☐ 특허(실용신안) 출원	예) 특허 몇 건 출원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 국내 학회 참가	예) 국내 학회 참가 횟수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실적을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계획서 1부.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결과보고서 : 별첨>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연구영역 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결과 보고서 1부 2015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 작성요령 안내

1. 연구내용 및 결과는 3쪽 내외로 간략히 정리
2. 각 항목의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기술
3. 작성후에는 작성요령 안내 박스를 제거 후 제출

I.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개요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2. 국내외 연구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학문 또는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등을 기술

6. 연구결과물

※ 여타 논문집의 논문 형태로 작성 예) 제목, 저자, 초록, 본문내용, 참고자료

<붙임2>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연구영역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연구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참고 및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계획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계획을 작성
	☐ 전국규모 이상 경진대회 수상	지도학생 전국단위 경진대회 지도 계획을 작성
지정선택 지표	☐ 학생지도	학생 지도 운영 계획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금오공과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실적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실적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실적을 작성
	☐ 전국규모 이상 경진대회 수상	학생 경진대회 수상실적을 작성
	☐ 학생지도	학생 지도 운영 실적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5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5.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IV 행정사항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제5조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심의사항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심사 및 개인별 지급액 결정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 위원 구성(안)

구 분	소속	직위(급)	성명	임명기간
위원장	교무처	교무처장	이재원	당연직
위 원	학생처	학생처장	방대석	당연직
위 원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승희	당연직
위 원	사무국	사무국장	박성수	당연직
위 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곽호상	당연직
위 원	전자공학부	교수	안희욱	2015.8.1.~2016.2.29
위 원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영학	2015.8.1.~2016.2.29
위 원	신소재공학부	교수	노재승	2015.8.1.~2016.2.29
위 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조현걸	2015.8.1.~2016.2.29
위 원	학생처	학생과장	김종필	2015.8.1.~2016.2.29
위 원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팀장	천병광	2015.8.1.~2016.2.29
계			11명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업무 분담

부서명	주요업무	세부업무
교무처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하 “비용”) 지급 업무 총괄 - 비용 지급 관련 대내외 업무 조정	- 교육부 공문 접수 및 보고 - 비용 지급규정 제·개정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전임교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학생처	직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K-CDP 센터	K-CDP시스템 활용	- K-CDP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직원은 학생 진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사무국 (재정정책팀)	예·결산 및 예산배정	- 비용에 대한 예산 및 결산(공고) - 재정위원회 심의 - 예산배정
정보전산원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교원업적평가 자료 연계 · K-CDP센터 자료 연계 · 기타 개인별 실적자료 입력 프로그램
종합학사 행정실	전임교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각 부서	직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4. 회의 녹취록 전문

일 시 2015년8월20일(목) 오전 11시 00시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3.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 | |
|--|-----|
| 1.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127 |
| 2.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변경안 | 130 |
| 3.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138 |

(11시04분 개의)

1.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재정위원회 임시회 개의 및 새 위원 소개

○ **간사 배효근** 안녕하세요? 재정위원회 간사 배효근입니다.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개의를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위원 15분 중 13분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운영규정 제8조 제5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채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채창현** 입추가 지나니까 무더위가 참 거짓말처럼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또 오늘 비가 와서 상당히 선선해서 지내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다들 모습 뵈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감사인 총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배효근** 예,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을 8월 7일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전보 조치에 따라서 안영철 재정위원이 인사팀장에 보임되어 직장협의회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희천 산학지원실장님이 8월 17일자로 재정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새로 임명된 이희천 재정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이희천 위원** 예, 이번에 오늘 자로 임명받은 재정위원 이희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일동** (박수)

○ **위원장 채창현** 2015년도 재정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중에서 제가 발언한 ‘교수회 의장’을 ‘교수회 회장’으로, 정재훈 팀장이 발언한 ‘교수회장님이 방

청하고 계신다'는 잘못된 것으로 '방청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기타 회의록의 내용이나 회의 진행 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 **박성수 위원** 예, 사무국장 박성수입니다. 우선, 지난번 재정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을 모두 정리를 해서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는 그동안의 안건, 녹취록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정호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셨었는데 소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논의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각 부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교체가 돼서 빨리 못했는데요. 조만간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참고해서 내년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275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발언하실 때 가능하면 간결하게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 **최낙렬 위원** 위원장님, 오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 **위원장 채창현**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렬 위원** 속기록에 특히 오타들이 많이 있던데 오타 검색하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름도 좀 많이 틀려요. 구점호 위원이라고, 김점호 위원이라고, 위원으로 하다가, 김점호 위원은 없는데, 그다음에 구호정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이승한 이승한 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 하여간 오타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을 한번 좀 걸러서 교정하면 좋겠습니다.

○ **박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처음에 누구다라고 성명을 밝혀야만 녹취를 하는 속기사가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해야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저도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제본을 한 뒤라 좀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기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거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순서대로

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마이크를 켜시고 누구누구 위원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안건에 대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3건인데 제1호 안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입니다.

제2호 안건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제3호 안건,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기 등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지침 3조 1항에 의하면 회기는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정위원회 임시회기를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약 10일간으로, 10일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소위원회 안건 회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교육, 연구 및.

○ **최낙렬 위원** 잠깐만, 여기 손 든것도 좀 봐주세요.

○ **위원장 채창현** 죄송합니다. 예, 최낙렬 위원님.

○ **최낙렬 위원** 예, 최낙렬 위원입니다. 저는 그다음도 읽을 줄 알고. 회부 생략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보면 별 사항이 아니니까 소위원회 검토까지 필요하겠나 하겠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것은 넘겨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일정이 빡빡하고 시간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오늘 중으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부탁인데 소위원회 시간, 짧게는 2시간이라도 좀 주시고 그런 다음에 속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러면 3개의 안건을 개별적으로 소위원회 심의할지를, 회부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안으로. 3개 다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개별사안으로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각 안건에 대

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할지를 매 건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교무처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 **이재원 위원** 교무처장 이재원입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쪽에 있습니다. 1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개정사유인데요. 개정사유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은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영역별 지급기준, 실적평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도별 지급계획의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임교원의 영역별 지급기준과 직원의 영역별 지급기준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평가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은 교육부, 교육부의 대학회계안착 방안 가이드라인입니다. 합의에는 기획위원회와 규정심의위원회, 그리고 교무회의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2015년 8월 18일 교수회에서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의 불찰로 빠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로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개정 전문을 보면, 2쪽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제 4조 지급대상에 보면 다만, 연구년, 휴직, 파견 및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이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마치 이제 문구를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연구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구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교육영역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연구년 가시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연구년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만, 휴직 8개월 및 직위해제 등으로’ 이와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전임교원의 영역별 지급기준인데요. 이 지급기준은 지급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8조 연도별 지급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는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직원의 영역별 지급기준인데요. 이 내용은 지급계획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조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실적평가가 있는데 이 실적평가도 역시 지급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한편 제11조 환수사항인데요. ②에 ‘환수의 범위 등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것을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부칙을 집어 넣었는데요.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계획에,

○ **위원장 채창현** 지급계획이 제1호 안건인가요?

○ **이재원 위원** 규정에 딸려 있는,

○ **위원장 채창현** 지급계획은 제 2호 안건입니다.

○ **이재원 위원** 아, 그런 가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교무처장님께서 제 1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은 이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하는 안건은 안건 자체에 대한 심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교육부 및 내부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를 승낙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낙렬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절차 또는 법리 등에 대한 내용 또는 문구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

○ 위원장 채창현 제2호 안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2호 안건에 대해서도 교무처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예, 지급 계획 기준에 대해서 학부장회의 등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오자가 있습니다. 우선, 오자 먼저 잡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맨 밑에서 세번째, 선택지표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택지표2입니다. 선택지표2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26쪽?

○ 이재원 위원 예, 26쪽 적요 두 번째 선택지표1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2로 바꾸겠습니다. 또 오자가 하나 있는데요. 35쪽에 보면 2015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비용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원대상자에서 2015년 3월부터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 3월 현재,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2015년 3월 현재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 이재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3월 달 기준으로 연구년에 가 계신 분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영역의 기본원칙은, 죄송합니다. 14쪽에 보면 관련 근거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그리고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에 의거해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급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영역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지급기준. 지급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세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 2015년 학년도에 대학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예산은 모두 포함하되 공통지표와 선택지표 및 지정선택지표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공통지표 80%입니다. 학기별로 40%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선택지표 20%입니다. 실적에 따라 20%를 차등지급합니다. 지정선택지표는 영어강의지원비 지정선택지표 연구영역이고, 연구영역의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요, 그리고 교재개발비, 학생활동지원비, 이것은 본 계획 내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라. 2015학년도는 각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연간계획으로 제출받으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영역은 8월과 익년도 1월에 각각 40%, 학년 말에 20%를 지급한다.

마. 선택지표에 대한 실적 평가는 4단계 S, A, B, C로 구분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C등급을 부여하여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휴직, 파견, 직위해제 중인 자, 해당기간 안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해당 분야 실적이 전혀 없거나 최저점수 이하인 자.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실적 평가기준.

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학년말에는 실적 인증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각 영역별 실적은 해당 부서의 실적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실적자료가 없는 항목은 개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4. 담당부서.

가. 영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자료제출부서에서는 실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가. 허위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나. 실적 평가 시 해당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 지급된 비용.

다.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 지급된 비용.

라.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마.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시행 1. 규정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원, 조교 및 대학 회계직 포함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1개 학기 기준 평가기간 예산이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예, 2015학년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겠습니다. 교육영역입니다.

여기 지금 연구영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연구영역이 아니라 교육영역입니다.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교육영역은 반영 비율이 전체예산의 32.7%입니다. 공통지표로는 강의개선 활동비 11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선택지표 교육활동비가 2억 8,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정 선택에서 교재개발비는 7,000만원, 그리고 영어강의 지원비는 9,900만원입니다.

평가지표를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내용인데요. 의무 제출은 교육계획서, 그리고 교육실적보고서입니다. 교육계획서는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교육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실적보고서는 교육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을 제출합니다. 이때 공통지표가 있는데요. 공통지표로 강의개선활동에 책임시수와 CQI가 있습니다. 책임시수로 준수했는가 하는 것 하고요. CQI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가 하는 것이고요. 미달할 경우 1학점 당 기준액의 1%씩 감액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표에 첫 번째 학부 강의평가 점수입니다. 4.5이상 5점, 4.0이상~4.5미만은 4점, 3.5이상~4.0미만은 3점, 3.0이상~3.5미만은 2점, 2.5이상~3.0미만 1점, 2.5미만은 0점입니다.

두 번째 수업 보조자료 활용입니다. 과목당 두 점을 제출하도록, 학점에 관계없이 과목당 두 점. 즉, 예를 들어서 PPT 파일이라든가 또는 PPT 파일이 아닌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업 보조자료로 활

용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학부 학생수강 인원입니다. 1학점 당 평균 수강인원인데요. 10명 미만 0점, 11~15명 1점, 16~20명 2점, 21~25명 3점, 26~30명 4점, 31명 이상 5점입니다. 지정선택지표로 교재개발비, 지급대상은 연구년 교수입니다. 지급액은 200페이지 이상씩 500만원입니다. 1인 한 과목에 한정을 하며 ISBN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문, 즉 교재는 심사하여 적격판정시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재개발비 지원기준은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영어강의 지원비, 영어강의 지원비는 학기 당 3학점 한 강좌당 70만원, 2학점 한 강좌당 50만 원, 그리고 영어강의 지원비에 교재개발비 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1학기는 책임시수, 그러니까 2015년도 1학기는 책임시수 2회분만 평가합니다. 학생 수강인원, 학부 과목 중 순수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는 제외합니다. 선택지표에서 학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차등지급합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 학년별로 S, A, B, C 네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S는 상위 20%, A는 60%, B는 하위 20%, C는 선택지표에서 2점 미만인 경우에 C등급입니다. 그리고 A를 기준으로 A는 137만원입니다. 그리고 S등급은 20% 많은 164만4천원이고요. B등급은 20% 적은 109만6천원입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은 1번, 2번, 3번순으로 고득점자순입니다. 평가 및 지급 시기는 1차 평가 8월 달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해서는 1차 평가를 8월달에 하고요. 2차 평가는 2016년 1월달에 하고요. 그리고 3차 평가는 2016년 2월에 합니다. 공통지표로 1차 평가 40%, 2차 평가 40% 그리고 3차 평가 20%입니다. 평가근거는 1차 평가 교육계획서, 그리고 2차 평가는 1, 2학기 이행실적, 3차 평가는 2015학년도 교육실적입니다.

평가 방법 및 지급방법은 1차 평가는 교육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2차 평가는 1, 2학기 공통지표 달성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지급합니다. 그리고 3차 평가는 1, 2학기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후 차등지급합니다. 확인 자료는 1차 평가는 교육계획서 심사결과표입니다. 2차 평가의 확인 자료는 강의책임시수 준수, 그리고 CQI 제출입니다. 3차 평가는 강의평가점수, 수업보조자료 활용 실적, 학부생 수강인원입니다. 평가지급률은 공통지표에서 교육계획서 교육실적보고서 강의개선활동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80%를 지급하고 선택

항목, 선택지표에 1~3까지의 항목에 따라서 0~20%를 차등지급합니다.

이제 연구영역입니다. 연구영역은 반영 비율이 전체 예산의 41.6%입니다. 연구영역 지급기준 역시 공통지표는 5억 3,450만원입니다. 선택지표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정선택지표는 교내학술연구과제지원비 11억 9,320만원이고요. 논문게재발표경비지원비는 1억 3,360만원입니다. 교내학회참가경비지원비는 3,600만원입니다. 대외연구과제선정장려금 1,200만원입니다.

26쪽에 평가지표를 보겠습니다. 의무 제출이 있는데요. 연구계획서 제출 시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지 되고 그리고 연구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계획서 제출시에 공통지표, 그리고 선택지표, 지정선택지표에 대한 연간 연구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연구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지표가 있는데요. 공통지표는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를 넣습니다. 기본연구 또는 정책연구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를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선택지표로 7가지가 있습니다. 교외연구비 수주가 있습니다. 기본 500만원당 1점이고요. 그리고 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건당 1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적요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 동일학회, 동일시기 및 같은 장소에서 1인, 한 사람이 4개 이상 과제를 발표하게 되는 경우에 3건을 초과하게 되는 네 번째 건수부터 1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전문도서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된 저서 한 건당 5점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게 되는 경우 한 건당 3점입니다. 지식재산권이나 디자인재산권은 한 건당 2점입니다. 기술이전은 50만원당 1점입니다. 7번, 동네학회 참가 1건당 1점입니다. 이것은 3회차 이상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 3회차부터 1점씩 부여하게 됩니다. 지정선택지표로 다른 과제로 교내일반과제 건 당 700만 원, 그리고 중점연구과제 건 당 1,000만 원, 신입교수 연구과제 건 당 1,000만 원, 그리고 연구논문 게재경비가 있습니다. 건 당 논문의 질에 따라서 또는 인원수에 따라서 6만원에서 1억까지입니다. 국내학술계에 발표 1건당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대 1회 3건까지 인정합니다. 국외 학술대회의 발표 한 건당 100만원입니다. 국내학회에 참가 1건당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2건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대외연구과제

선정이 되는 경우에 한 건당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 이것은 학년별로 따지게 되는데 S, A, B, C 이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S, 상위 20%, A, 60%, B 하위 20%, C는 선택지표에서 1점 미만인 경우에 부여합니다. A를 기준으로 A는 지급액이 57만원입니다. S는 20%만 68만 4,000원, B는 20% 작은 45만 6,000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동점자 처리기준이 있는데 선택지표의 1, 2, 3, 4, 5, 6, 7번 순으로 고득점자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S에서 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입니다. 비용 지급률은 공통지표는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보고서, 기본연구계획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 80%를 지급하고요. 선택지표 7개의 항목에 따라서 0~20%로 차등지급합니다.

평가 및 지급시기.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를 역시 교육영역과 똑같이 합니다. 기준금액은 287만원입니다. 1차 평가와 2차 평가는 공통지표로 40%, 3차 평가는 20%를 지급합니다. 평가근거로 1차 평가는 연구계획서, 2차 평가는 연구실적 보고서 및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3차 평가는 선택지표 실적입니다.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은 1차 평가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2차 평가는 연구실적 보고서 및 기본연구결과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가로 차등지급합니다. 3차 평가는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로 차등지급합니다. 확인 자료는 1차 평가는 연구계획서 심사결과표입니다. 2차 평가는 기본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3차 평가는 7가지 선택사항입니다.

학생지도 영역입니다. 학생지도 분야은 반영 비율이 전체 예산의 25.7%입니다. 지급기준은 공통지표, 학생면담실적, 6억 5,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선택지표는 17,6만 4,000원입니다. 16억 4,200만 원인가요?

○ 박성수 위원 1억 6,400만 원.

○ 이재원 위원 1억 6,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정선택지표는 교육활동 지원비에서 4억 5,200 원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7,300만원입니다. 평가기준은 의무 제출, 계획서 제출, 그리고 보고서 제출입니다. 계획서 제출은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입니다. 보고서 제출은 학생지도 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입니다. 평가항목에 공통지표, 그리고 학생 면담이 있

습니다. 학생 면담 학기 당 20회 이상인 경우에 160만원입니다. 20회 미만 시 회당 8만 원 감액입니다. 단, 2015년도는 연 40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선택지표에 학생취업활동으로 학생취업지도 1건당 1점입니다.

학생 비교과 활동지원인데요. 두 번째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건수가 0.5점, 독서 토론지도, 지도학생 수 11명 이상 3점, 지도학생수 5~10명 2점, 지도학생 수 1~4명 1점.

현장 실습지도 박람일정입니다. 지도학생을 외부 경쟁대회 수상 및 참가실적입니다. 수상 건 당 3점, 참가 건 당 1점입니다. 학생활동지원, 지정선택지표입니다. 학생지도 실적 인정기준 별표 1의 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당 8만원씩 최대 25점까지 인정합니다. 2015년도 2학기 기준으로 연간 최대 50점입니다. 학생활동지원은 제출 자료가 일지 및 결과보고서입니다.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 학기별로 S, A, B, C 이와 같이 4등급입니다. S는 상위 20%, A는 60%, B는 하위 20%, C는 2점 미만입니다. 지급액은 A를 기준으로 A는 40만원, S는 48만원, 그리고 B의 목록은 32만원입니다. 교직원인 학생지도 실적 인정기준 별표 1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선택지표로 활용하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역시 선택지표의 1, 2, 3, 4, 5번 순입니다.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입니다. 비용지급률은 공통지표로 학생지도 활동계획서, 학생지도 활동보고서, 학생면담 실적을 평가해서 80%를 지급하고 그리고 선택지표 1~5번 항목에 따라서 0~20%로 차등지급합니다. 역시 평가 및 지급 시기는 1차 평가 8월, 2차 평가 2016년 1월, 3차 평가는 2016년 2월입니다. 기준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공통지표 1차 평가 40%, 2차 평가 40%, 3차 평가는 20%입니다. 평가 근거는 1차 평가, 2015학년도 학생지도 활동계획서입니다. 2차 평가는 2015학년도 학생지도 활동보고서입니다. 3차 평가는 선택지표 실적입니다.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은 학생지도 활동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2차 평가는 학생지도 활동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로 차등지급, 3차 평가는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로 차등지급입니다.

확인자료로 1차 평가 활동계획서 심사결과표입니다. 2차 평가는 학생지도 활동보고서입니다. 3차 평가는 선택지표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 사항입니

다. 그리고 별표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교무처장님께서 제2호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회부 본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정연구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정연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정연구 위원** 예, 정연구입니다.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교육·연구비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을 교수회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난 18일 화요일 평위원회를 열어 관련 계획 내용을 가지고 평위원이 참석하고 교무처장님께서 참석한 상황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그 회의 내용에서 저희 교수회에서 변경을 해 주십사하고 제안한 사항이 있고, 그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 참석하셨던 교무처장님께서 변경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교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혹시 정위원님 유인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혹시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 **정연구 위원** 저희는 따로 준비는 해 오지 않았습니까는 상세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 **최낙렬 위원** 잠깐, 진행 발언을 좀.

○ **위원장 채창현** 네.

○ **최낙렬 위원** 최낙렬입니다. 이 자료가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와서 교수회의 끝나고는 당연히 수정된 안이 여기로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던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건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료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

○ **위원장 채창현** 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시죠.

○ **정연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수회 평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 교육영역에서 C등급을 실적이 없거나 2점 이하로 제한되어있던 부분을 2점미만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반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영역에서 C등급을 당초 실적이 없는 경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1점미

만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생지도영역입니다. 학생지도영역에 공통 지표로 학생면담 20회 이상, 20회 미만 시 1회 당 8만원 삭감 이렇게 되어있었던 부분을 저희 교수회의에서는 학생면담 학기당 15회 이상, 그리고 15회 미만 시 1회당 1% 감액으로 수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1% 감액입니까?

○ **정연구 위원** 네, 1% 감액.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평위원회에서 교무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동의해 주셨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선택지표 5번 사항, 5번 항목에 외부 경진대회 참가한 경우에 1점 추가하는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지도 영역의 C등급을 당초에 실적이 없거나 2점 이하로 돼 있던 부분을 2점미만으로 제안을 드려서 2점미만으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사실은 제2호 안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넘어왔어도 되는 건데 그러면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교수회에서 수락을 하면 그러면 확실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이재원입니다. 교수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 면담 학기 당 15회 이상, 지금현재 160만원 그리고 15회 미만 시 1회당 교육영역에서는 1%씩 감액을 했으니까 이 학생면담에서도 1%씩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되지 않은 그런 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학생면담에 대한 내용을 학생 면담 학기 당 15회 이상 160만원, 15회 미만 시 회당 1% 감액, 2015년도 연 40회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

○ **정연구 위원** 30.

○ **이재원 위원** 아, 연 30. 예,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면담을 한 번도 안 해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경우에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저 10회 이상이라

고 하면 이런 단서조항을 집어넣고 학기, 그러니까 1회, 15회 미만 시 회당 1% 감액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채창현** 학생면담 학기당 10회 이상, 최소 10회 이상?

○ **이재원 위원** 예, 최저 10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최저 10회 이상.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학생면담 학기당 최저 10회 이상 두 번 중첩이 되는 거네요. 15회 이상, 최저 10회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이렇게 되네요.

○ **이재원 위원** 예예, 맞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 **진주호 위원** 예, 학생복지위원장 진주호입니다. 아까 학생면담 10회, 최저 10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저 10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 **이재원 위원** 예, 맞습니다.

○ **진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방대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방대석 위원** 예, 방대석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수리 사항은 수정이 안 됐지만 합의에 의해서 수정이 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이승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희 위원** 기획협력처장 이승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합의안을 2차 수정할 때도 교육부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변경이 됐어요. 됐는데 17일날 제가 교육부에 갔을 때 담당사무관을 뵈었는데 그때 “2차 때 합의한 안으로 지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컨설팅은 내려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마 혹시 자기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올 텐데 만약에 와서 이 부분을 발견을 하고 이의제기를 했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 그게 참 고민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최낙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낙렬 위원** 민의는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서 기는 것은 전 반대고요. 교수들 당사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도 아니고 따져봐서

평균 내보니까 자료가 지금 한 10몇 회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교육부에서 그것이 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수준인데 그 수준보다 기본을 높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강하게 더 요구한다면 그때는 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맞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미리 예단해서 미리 갖다가 까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정안하고 조금 더 다른 면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 10회 이상’이라는 것 고심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걸려서 못 받는 분도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 **이승희 위원** 그 부분은 아마 교무처장님이 제안하신 것이 그렇게 맞는 것이, 왜냐하면 면담을 안 했는데 지급이 됐다고 하면 아마 감사원에서 회수당할 것이 100%, 회수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수준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양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낙렬 위원** 최낙렬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최낙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최낙렬 위원** 사실 저희들 부담이 굉장히 커거든요? 부담이 굉장히 커요. 분명히 적용이 되면 걱정이 많이 돼서 사실 이렇게까지 부담을 받으면서 이 안을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 미리 좀 걸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것 같고 교무처장님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애쓰시는 것 저희 다 아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하자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싶지만...

○ **위원장 채창현** 예, 이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재원 위원** 예, 교무처장 이재원입니다. 총장협의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총장협의회라든가 혁신추진단이라든가 또는 교무처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부 측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기준안이 공통지표를 이행을 하면 기본으로 80%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실적이 없어도 80%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 회계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드린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기본으로 드린다하더라도 기본을 해야 기본을 드린다는 얘기고요. 기본도 안 했는데

기본을 드린다는 것은 교육부 방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도 드렸다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회수조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한 10회 정도로 하면 어떨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이승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15회로 줄이는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급하게 31일까지가 혁신보고서에 담다 보니까 미처 시뮬레이션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돌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구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구정호 위원** 네, 구정호입니다. 교양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면담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업 때 학생들을 유도해 가지고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프로세스 상에서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저희 학교의 교양교직에 또 몸담고 계신 교수님 비율이 꽤 됩니다. 소수라고 보면 소수이긴 하겠지만 그 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교무처장님이 중간선에서 최저 수치를 10회라고 하셨지만 이것 학기에 10회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사항에서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최소 1년 단위로, 지금 어차피 1학기가 지나갔고 남은 1학기가 2학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해서 연 10회, 예를 들어서 연 10회 미만이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교수회에서 제안하고 교무처에서 합의한 학생면담 학기당 15회 이상 160만원, 15회 미만 시 회당 1% 감액, 또 2015년도 연30회 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 건으로 는 최저 10회일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을 분리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렬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그러면 먼저 교수회에서 제안하고 교무처에서 받아들인 안, 합의에 준한 학생면담 학기당 15회 이상 160만원, 15회 미만 시

회당 1% 감액, 2015년도에는 연 30회 이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에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승희 위원께서 좀 우려하는 바, 교육부하고 합의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중에 교육부하고 충분히 딜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승희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이재원 위원.

○ 이재원 위원 예, 이재원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컨설팅을 나와서 여차피 저희가 컨설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예상은 못하고요. 그리고 그 학생면담 최저 횟수를 그러면 2015년도는 이미 한 학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5회로 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최저를 10회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채창현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 이승희 위원 학기당이요.

○ 이재원 위원 학기당이네요. 그러면 2015년도 올 해는 최저를 5회로 하고요.

○ 위원장 채창현 쉽게 학생면담 학기 당 20회를 15회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구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 이재원 위원 20회를 15회로 줄였고요. 그것은 첫 번째 안이었고, 최저

○ 구정호 위원 그 다음에,

○ 이재원 위원 위원장님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것부터

○ 위원장 채창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학생면담 학기당 15회 이상, 그 다음에 15회 미만 시 회당 1% 감액, 거기까지 결정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것과하고 최저 이런 것을 정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방대석 위원 방대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첫 번째 학생면담 학기 당 15회 이상 160만원, 15회 미만 시 회당 1% 감액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최저 학생면담 건수인데요. 지금 교무처에서는 최저 10회 이상, 1년에 10회 이상이죠?

○ 최낙렬 위원 한 학기에. (웃음)

○ 위원장 채창현 한 학기에 최저 10회 이상이고 2015년도인 경우에는 연 10회?

○ 이재원 위원 2015년도에 한해서 5회로 하시

고, 그리고 2016년부터는 학기당 10회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최낙렬 위원 그것은 너무 적습니다.

○ 구정호 위원 나중에 교육부에서 감사로...

○ 위원장 채창현 손을 거수를 드시고 제가 호명을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정호 위원.

○ 구정호 위원 네, 구정호입니다. 연 10회, 학기당 5회라 할지라도 교육부에서 나중에 감사, 컨설팅을 받으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적다, 그러면 저희도 나름 교양교직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지금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조정해서 학기 당 10회로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최낙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최낙렬 위원 예, 저도 교양교직과정부의 교수라서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학년 학생들 과목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면담을 오게 하려고 하면 일부러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강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로상담 이런 것도 저한테는 안 오고, 학생생활 이런 것도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횟수를 올린다면 맞추겠죠. 맞추겠지만 쓸데없이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에 한 30명씩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그런데 너무 그것은 학생들에게도 쓸데없는 면담이고, 교수로도 할 짓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공통지표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표라는 것을 한꺼번에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양과는 이렇게, 전공은 이렇게 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낮춰 주시면,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진주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주호 위원 네, 진주호입니다. 아까 교양교직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들 중에서 교양교직부에 따로 계시는 분의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최낙렬 위원.

○ 최낙렬 위원 네, 한 열네분 계시는 걸로 압니다. 15%.

○ 진주호 위원 그러면 아까 구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양교직부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학생면담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교양교직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좀 횟

수를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구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호 위원** 네, 구정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다
르게 조정할 수가 없고, 공통지표로 동일한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
양교직부에 계신 교수님만을 위한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 **이재원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양교직 소속 교수님들한테는 지도학
생들 배정이 안 됩니까?

○ **최낙렬 위원** 예, 안 됩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이재원 위원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예, 이재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회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업적 평가에서도 기준이 15회입
니다. 그리고 교양교직과정에 계신 교수님들도 업
적 평가를 위해서도 15회 정도는 하시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회 정도는 하시는데 10
회 정도로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정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
오.

○ **정연구 위원** 예, 정연구입니다. 그 최저기준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가 학생면담을 전혀 안 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이라고 생각
되면, 굳이 학기 당 10명, 5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
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논의하
고 있는 비용지급계획이 2015년도분입니다. 그래
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는 한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학기당 5명
으로 해서 종료를 하고, 2016년도부터는 아마 이
지급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에 2015년도의 경
우 최저기준을 5명이라고만, 학기당 5회라고만 적
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회로 할
건지 아니면 10회로 할 건지는 2016년도에 지급규
정계획을 작성할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
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교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예, 그러면 2015학년도에 한해서
만 5회로 그렇게 최저 면담 횟수를 5회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16년도부터는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
니다. 되겠습니까?

○ **위원장 채창현** 그러면 제2호 안건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인 공통지표,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공통지표 건이 해결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학생면담 학기 당 15회
이상 160만원, 15회 미만 시 회당 1% 감액, 2015
년도 연 5회 이상, 맞습니까?

○ **정연구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구정호 위원님.

○ **구정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이것 말
고 한 가지 더 제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사안이 하
나 있습니다. 교직원이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 받도
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자료 보시면
학생지도에 대한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위원회 열리면 제가 소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그러면 연구영역
이 있습니다. 교직원에서도 연구영역이 있고요. 세
부사항을 보면 30명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영역이 교수와 동일하게, 예를 들어
서 그러니까 교수와 동일하게 같은 지표를 써야 하
기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교직원으로 각각 연구계획
서를 제출하고 이것에 상응하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그래야지만 이 30명의 대상이 제가 누
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30명이 어떤 금액을 갖는
지, 교수와 동일하게 받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
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이재원 위원님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 위원** 자료 25쪽을 보면요. 연구영역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공통지표에 기본연구과
제 230만원, 정책연구과제 115만원 이렇게 구분
돼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정책연구과제가 직원분들이 하시
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 **이재원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해소가 됐습니까?

○ **구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채창현** 제 2호 안건의 지급 계획 변경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용어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8쪽을 보시면 학생지도영
역에 보면, 의무 제출의 평가기준, 평가기준의 의

무 제출에 계획서 제출이 필수지표, 공통지표를 잘못 쓴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밑에 학생지도계획서도 뒤에 보면 표 서식이 학생지도영역 활동계획서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용어하고 서식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해 주시기를, 일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최낙렬 위원 예, 저 최낙렬 위원입니다. 잠깐 우려스러워서. 거기 2015년도는 연 5회 이상이 아니고 '최저 연 5회' 이렇게, 최저를 붙이는 게.

○ 이재원 위원 예, 최저 연 5회 이상.

○ 위원장 채창현 진주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호 위원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질문 하나 하고 싶어서요. 학생지도실적 인정기준 별표에 맨 첫 번째 항목에 보면, 학생상담 또는 지도에 재학생 대상 수강신청 상담지도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수강지도 상담을 뜻하는 건지?

○ 이재원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방대석 위원님.

○ 방대석 위원 맞습니다.

○ 진주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이 선택지표에 해당하는 분의 지도학생이 있는 지도교수님들에 해당하는 건가요?

○ 방대석 위원 네, 맞습니다.

○ 진주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쟁점들이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2호 안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 위원일동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따라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채창현 다음은 제 3호 안건인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 박성수 위원 예, 사무국장 박성수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호 안건, 2호 안건을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전입금 등이 일부 발생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267억 3,826만 8,000원이고, 지난번 예산보다 16억 3,09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총무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배효근 예, 총무과장 배효근입니다. 추경 세무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금액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산단 회계 전입금 6억 4,071만원, 근로장학금 보조금 5억 9,020만원, 그리고 기성회계, 청산예정액 4억원으로 총 16억 3,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액 편성내역은 교원 인사제도 혁신 TF운영사업 1,100만원, 교육·연구 및 학생활동 지도비 교원분과 직원분을 합하여 4억 1,697만 3,000원, 그리고 국가 근로장학금 5억 9,020만원, 산학기술창조 신축설계용역비 6억 1,071만원,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채용 연계형 산업인턴 지원사업 대응자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79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3,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비 학생활동지도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분은 당초 29억 9,377만 6,000원에서 29억 3,309만 4,000원으로 6,0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직원분은 4억 7,765만 5,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분은 학생처에서 당초 4억 8,6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을 고려해서 884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54쪽 세출예산 과목 변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은 예산 편성액과목이 맞지 않아서 변경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교무처 영어강의지원비 9,900만원을 강의료에서 교육·연구 활동, 교육지원금 및 학생 지도비용으로, 그리고 산학협력단 영어논문교정비 1,500만원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서 연구개발비로, 산학협력단 학술대회 지원비 9,000만원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에서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51쪽을 잠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편성한 교육부의 연구비 통합관리방침에 의하여 당초 본예산

43억 9,257만 6,000원보다 4억 9,197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8,4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하단부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예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A3 용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회의자료 55쪽부터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 예산 변경이 있으면 총장의 승인 동의를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이 총장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 **박성수 위원** 예, 자체를 새로 예산안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사항이 아니고 이제 막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동의한 것으로 된 거죠?

○ **박성수 위원** 예, 총장님 결재 맡아서 제안한 것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추경 예산안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낙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렬 위원** 예, 이것을 뭐 세세하게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요. 준비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사실은 교수회에서 한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제 받았거든요. 교수회에서 8일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넘어와서 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번 건은 소위원회에서 교수회 의견을 다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고,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정연구 위원 *****

최낙렬 위원께서 본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더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토론한 후에는 아무래도 거수로 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장세광 위원** 장세광 위원입니다. 지금 최낙렬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수회에서 어떤 안이 올라와도 재정위원회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네요.

○ **최낙렬 위원** 있습니다.

○ **장세광 위원** 아 예.

○ **위원장 채창현** 네, 최낙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최낙렬 위원** 질문으로 와서. 지금 재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구성원들 의견을 많이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총장님이나 위원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을 시간이 없었어요. 의견을 모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를 대표해서 소위원회가 열리면 자세히 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소위원회를 안 해도 말씀은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해 왔으니까 계속 여기서 질의하고 답하고 그러면 되죠. 소위원회로 굳이 안 가도 됩니다. 다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전체회의에서 하면. 효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장세광 위원님께서 교수회가 그러면 다 저거 하나, 이런 말씀같이 들려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나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입·세출예산이 학교 전체 일이고, 학교 전체 일에 교수들 생각을 궁금한 것이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이 있는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세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정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연구 위원** 예, 정연구입니다. 실은 저희 교수회에서 18일 평위원회 개최할 때까지 예산추가, 추경예산 부분을 받아서 검토를 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회장님께서 총장님께 엄중히 아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부분은 어쨌든 중요도가 큰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방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대석 위원** 네, 거기 교수회하고 본부랑 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자료가 서로 오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엮일려진 물이니까 접어두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다. 만약에 소위원회로 이 안건이 회부가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소위원회를 오늘 오후 중에 할 생각입니다. 만약하게 되면, 2시부터 한 4시정도까지 진행하고, 4시에 다시 재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오늘 중으로 본 안건을 심의할 생각입니다.

○ **방대석 위원** 확실한 절차입니까?

○ **위원장 채창현**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낙렬 위원님께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 **최낙렬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2시간 정도면 우리가 내일까지 회의를 연기를 안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낙렬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1쪽에 보면 이번 세입·세출 추가 경정안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래서 본 예산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2건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수 쪽에 예산을 6,000정도 돈 뽑아서 직원으로 바꿨나 하는 얘기하고 또 세출 과목예산, 세출예산 과목변경 네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해서 변경한 건데 그게 소위원회를 다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심의할 정도로, 또 질문할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 해 주세요.

○ **최낙렬 위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보는게.

○ **위원장 채창현** 예, 말씀하십시오.

○ **최낙렬 위원** 예, 예를 들면 산단 회계하고 이 대학회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또는 법률에 의하면, 규정 거기에 의하면 그 2014년도, 전년도 지급액의 결산액 한도액에서 예산을 짜라고 해서 우리가 짰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에 직원분들 것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 적법한 것인지,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들은..

○ **위원장 채창현**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하실 내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 **최낙렬 위원** 저는 한 4~5건 됩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 **최낙렬 위원** 뭐 구 교수님은 한 20개쯤 될 것

입니다.

○ **위원일동** (웃음)

○ **최낙렬 위원** 정교수님도 몇 개 될 것 같습니다.

○ **방대석 위원** 2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 **최낙렬 위원** 2시간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소위원회로 넘길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낙렬 위원이 대표로 발의를 하셔서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가부로 결정을 할까요? 네, 박성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박성수 위원** 예, 사무국장 박성수입니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소위원회 회부는 협의로 되어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이제 소위원회를 부의하는데 취지는 기본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다 소위원회에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분이라도 소위의 안이 있으면 소위에 가는 게 저희 규정안 취지에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거수를 하기보다, 원하시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는거고요. 다만, 의사일정을 오늘 오후에 잡는 것은 좀 급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따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잠시 5분이나 10분 논의한 다음에 내일할지, 모레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하니까 다시 정하고 그렇게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박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3호 안건을 소위원회로 심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재정위원회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재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연구 위원** 언제할 건지 예, 그것을 좀.

○ **위원장 채창현** 예.

○ **이재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이재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이재원 위원** 예, 이재원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안건, 두 번째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된 거죠?

○ **위원장 채창현** 네.

○ **이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먼저, 네.

○ **최낙렬 위원** 일정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내일은 생각을 별로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통화를 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좀 해 보는 쪽으로 건의도 드렸었고, 국장님 일정이 빡빡하고

준비할 것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하신대로 오늘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소위원회를 한 다음에 재정위원회를 다시 속개해서 보고 드리고 마칠 수 있으면 하는게 희망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이승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희 위원** 그렇다면 외부 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끝나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오후에 무슨 스케줄이 있는데, 오후에 참여하기가, 소위원이라 소위원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시청에서 약속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일정잡기가 좀 애매한데요.

○ **위원장 채창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성수 위원**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위원장님, 네. 네, 이번 회기는 아까 열흘로 잡아났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회를 하고 일정을 좀 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방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방대석 위원** 약간 여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쪽 회의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사실 말하면 24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이승희 위원**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웃음)

○ **방대석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농담이지만 교수님들 오가시다가 저희가 본부에 있으니까 자꾸 여쭙보시거든요. “우리가 계획한대로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줬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또 24일 건이 혹시 또 연기나 취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교수님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러면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고 그러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최낙렬 위원.

○ **최낙렬 위원** 지금 지급안하고 지급규정 계획 이런거가 되면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 부하고. 예산 추경예산안..

○ **정연구 위원** 아까 예산 추경도 들어가니까.

○ **최낙렬 위원** 그것은 물론 있는데,

○ **박성수 위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이제 지급이 안 되니까 이제.

○ **최낙렬 위원** 그래서 지급이 안 되니까,

○ **박성수 위원** 오늘 원래 방망이 두드리면 예산

배정안 총장님께 오늘 결재 맡고 내일 실무적으로 짝 해가지고 모레 나간다, 그런 계획인데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잠시 재정위원회 임시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5분 속개)

○재정위원회 임시회 속개

○ **간사 배효근** 재정위원회 임시회 속개에 앞서 성원 여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15분 중 12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채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위원회 임시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 3호 안건 추경예산안을 본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낙렬 위원** 제 생각에는 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효율적이고 그런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가동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병광 위원** 예, 천병광입니다. 그 세부 내용도 공유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필 위원** 네, 오전에 회의한대로 저도 전체회의에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또 소위원회하면은 시간도 전부다 일정도 안 맞는거고 또 맞춰야 하고 그러니까 바쁜 위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또 행정요원들은 실제로 바쁩니다 바쁜데 여기에 시간을 하루종일 내 가지고 하면은 다른 행정 업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전체 회의에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정연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정연구 위원** 네, 정연구입니다. 그 오전 회의 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정위원회 올라오는 안건 중에 남은 부분을 이제 합의해서 소위원회에 넘기려는 그런 부분이 규정에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도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네, 이승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이승희 위원** 아까 정회에 있을 때 저희가 협의 했을 때는 전체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한시 반에 그렇게 알고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왔는데 그걸 다시 말씀하시면..

○ **위원장 채창현** 사실 아까 우리가 잠시 정회하고 간담을 좀 나눴을 때에는 질문 내용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본회의에서 다루고, 심의, 의결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합의가 됐던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의사진행 사항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반드시 소위원회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 **최낙렬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뭐 그게 또 질문이 위축되고, 안 위축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좀 실망이 됩니다,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채창현** 저한테,

○ **최낙렬 위원** 아니, 물어볼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위원장 채창현** 아니, 그게 우리가 정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소위원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는 다시 번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한시 반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한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고 속개하면서 그때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세 분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질문을 좀 줄이는 방향에서 필요한 것만 반드시 질문해서 정규 회의 시간을 줄여 주십사 그게 좀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원회를 하고 다시 모인다면 나머지 위원들은 사실 밖에 나가서 또 그 시간 동안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소위원회도 회의록에 다 기재될 내용이고, 말씀대로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될 건데 꼭 소위원회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지.

○ **최낙렬 위원** 요구는 합니다. 원래 정신에 따라서 요구하고요. 그렇지만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목살이 됐다 하는 것은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이게 어차피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 **최낙렬 위원** 예예, 그래서 발언을 합니다.

○ **박성수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하기로 합의했었고, 소위원회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소위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절대로, 기본적인 정신이 소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를 한명이라도 주장을 하면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정회를 하고 소위를 언제 할 건지 일정을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그부분

은.. 다시 하시죠, 그러면.

○ **위원장 채창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잠시 만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또 그러시니까 제가 사실 난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최 위원님께서 내가 뭘 전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심히 좀 불편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몇몇 위원께서 소위원회를 요구하시니까 소위원회를 열고, 본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바와 같이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4시까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4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재정위원회
(임시회)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본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2015년8월20일(목) 오전 14시 30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3

(14시 30분 속개)

○재정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속개

○ **간사 배효근** 예, 간사 배효근입니다. 임시회 속개에 앞서 성원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15분 중 12분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251억 735만 8,000원에 대해서 16억 3,091만 원이 증가된 267억 3,826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제3호 안건인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임시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위원님들 전원의 찬성에 의해서 제3호 안건인 2015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안건 외에 기타 의견이나 또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법률에 의하면 우리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 간서인을 3명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저번과 동일하게 3분, 학생처장님, 학생회에서 한분, 또 교수회에서 한 분, 천병광 위원님까지 세 분이 간서인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따라서 안건이나 기타 의견 또는 간서인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의결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고 의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기를 종료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일동 (박수)
- 위원장 채창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위원일동 (박수)

.....

○출석 위원(13인)

이 재 원	방 대 석	이 승 희	박 성 수
정 연 구	채 창 현	최 낙 렬	구 정 호
김 종 필	이 희 천	진 주 호	장 세 광
홍 순 달			

2015년도
재정위원회
(임시회)

제1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소위원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2015년8월20일(목) 오후 1시 45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5

(13시46분 개의)

1. 2015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간사 강태구** 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재정위원회 제 1회 임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간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3호 안건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수 위원** 지금 녹음하고 있지?

○ **간사 강태구**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수 위원** 위원장 없어요.

○ **위원일동** (웃음)

○ **박성수 위원** 간사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 **총무과장 배효근** 예, 예산안은 아까 본회의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있으면 저희가 관련부서 또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낙렬 위원** 질문하면 되나요?

○ **총무과장 배효근** 네네.

○ **최낙렬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질문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그래서

우선, 53쪽에 보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산학협력단 것이 나와 있는데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 산단 회계하고 대학회계하고 분리되어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산단 쪽에서 대학회계로 올 순 있는데 대학회계에서 산단 쪽으로 못 가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세출이 산학협력단에 들어있나 해서 그것부터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 **총무과장 배효근** 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산학협력단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 전입금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6억 1,000만원, 6억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산단 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들어온 돈입니다. 들어와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런데 이것 사무국으로 넘어온 것 6억 1,000만원, 그것 넘어와서 사무국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번 표에 그 밑에는 산단이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배효근** 이것은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와서 다시 대응자금으로, 학교 대학회계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을 여쭙보는 사항이고요.

○ **총무과장 배효근**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도 이제 대응자금 학교

에서 항상 대응하시는거 아시겠지만은 저번에도 이제 요번에 조직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가면 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번에 조직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대학도 부득이하게 지금 산단의 연구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연구비도 산단 회계로 들어가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사실 있어가지고 조직개편도 하려고 하는 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총무과장 배효근** 결론적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연구비예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박성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고, 산단 과장님 답변하세요. 왜 저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그 건하고 다른 건입니다. 산단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앉으셔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다른 건인데.

○ **산단과장 이희천** 구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안에 산단 회계에서 이 대학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고요. 6억 1,072만원이라는 돈은 처음에 저희가 교수회의에서 승인했을 때, 전에 10억 1,472만원인가 승인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차 전반의 설계 용역비가 지금 방금 여기 안에 들어간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산단에서 바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부의 시설과의 전공영역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그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 본부에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단, 합리적이겠단 싶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 **최낙렬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 뒤에 것 두 번째 것. 그것은 산학협력단이,

○ **구정호 위원** 인턴사업 대응 매칭 작업하시는 그 부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 **최낙렬 위원** 그게 왜 산학협력단에서 그것을 하라 그것입니다.

○ **구정호 위원** 거기서 아예 집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 **최낙렬 위원** 그런 예산 어느 쪽에.

○ **산단과장 이희천** 산학협력상 산단에서는 대응자금을 절대 못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다

가 저희들 이월금도 넘겨 드렸고요. 본부에서에서는 대응자금을 낼 수가 있고.

○ **최낙렬 위원** 본부에 그러면 3천만원을 줘서 그것을 집행은 산학협력단이 하냐요?

○ **산단과장 이희천** 아닙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출...

○ **구정호 위원** 여기에는 집행이 산단으로 되어 있어요.

○ **산단과장 이희천**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과제의 대응자금이나 거기에 수주한 과제의 금액이 사업비에 이게 대응자금이 포함돼서 집행을 하게끔 돼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업 책임자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돈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학협력에 의해서 대학회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 부분을 산단에서 전입하셨고, 그래서 그 3,000만 원은 이제 대학회계에서 사업자금으로 출현이 된 겁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런데,

○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부서가 이렇게 돼 버리는데.

○ **최낙렬 위원** 계속 똑같은 것 묻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 둘은 그것을 다시 또 산단에서 줘서 산단에서 하나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세출예산 집행을 산단에서 하나?

○ **박성수 위원** 제 생각에 방금 정연구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부서명이 산단으로 되어있는데 이 이유는 어차피 지금 대학회계로 들어오면 제 도장 찍어서 지출될 거거든요? 맞죠? 맞죠? 총무과장님. 제 도장 찍어서 나가야 되죠? 이거 3,000만원은?

○ **총무과장 배효근** 예, 지출은 당연합니다.

○ **박성수 위원** 그런데 소속을 넣을 때가 없으니까 그냥 산단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제 도장 찍어서 나가는 돈입니다.

○ **구정호 위원** 사무국,

○ **박성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가 않잖아요.

○ **최낙렬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여기 협조를 받아서 여기하고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서명이 보통 돈을 쓰는 데를 적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적하신 거 같은데.

○ **최낙렬 위원** 예예예, 맞습니다.

○ **박성수 위원** 이 돈을 쓰는 데가 지금 본부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단 돈이라고 해 놓은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대학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 도장 찍어야 나갑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거지 예예,

○ **최낙렬 위원** 저희도 궁금했던 것이 산단에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산단으로 가는 것이 이상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본부도 아마 그런 비슷한데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는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냥 제가 괜히 도장 찍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면 받으시겠네요.

○ **위원일동** (웃음)

○ **최낙렬 위원** 그러면 이제 원래 예산은 15억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6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3억 얼마가 남는데 그것도 올해에 뭘 집행하시는지, 나중에 추경을 다시 더 넣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산단과장 이희천** 집행사안이 생기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대응자금의 31억 4,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산단에서 부담하는 게 21억 1,400여만원인데요. 그것을 이제 올해 최초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수회에 승인 받은 10억 1,400만원하고, 내년도에 6억, 그다음에 내 후년도에 5억을 저희들이 산단에서 열심히 벌어서 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나머지 4억이, 3억 얼마가 당장 집행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 건물에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그냥,

○ **최낙렬 위원** 예, 홀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다른데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 **산단과장 이희천** 예예.

○ **최낙렬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홀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적립금 식으로 쌓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쌓아놓는 형태가 이월금, 적립금,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쌓아놓는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발생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최낙렬 위원**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 **산단과장 이희천** 어쨌든 이 돈은 창조관 건립에 쓰도록 항목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다른 쪽으

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 예산하고 똑같이 이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 **박성수 위원** 그 부분은 저희 대학회계 쪽에서 눈을 부릅뜨고 확실하게 21억원 기본계획에 해놔기 때문에 21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건물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몇 달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이렇게, 안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최낙렬 위원** 사실은 3억을 쓸데가 있나 싶어서

○ **박성수 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기본계획에 서 있고, 교육부와의 약속이 다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큰 차질 없을 것입니다.

○ **산단과장 이희천** 산단에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구 위원** 맞습니다. 그 교수회 총회를 통해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창조관 건립 쪽으로 사용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산단과장 이희천**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수 위원** 사무국이 고맙습니다.

○ **구정호 위원** 구정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아마 사무국과 좀 관련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회의하실 때는 기성회계 청산액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직원이 같이 왔을 때, 그 연구사, 저희와 같이 연구, 교육, 학생지도수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4억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 **최낙렬 위원** 오, 질문 날카롭네.

○ **박성수 위원** 그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 **총무과장 배효근** 옆에 있는 그 자료 보시죠.

○ **박성수 위원** 구두로 설명 드리지죠, 쉽게. 설명 드리지죠.

○ **총무과장 배효근** 예, 지금 현재 그 4억 2700만원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4억 3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적하거나 자퇴하거나 그러면 기성회계에서 환불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이번에 사업설명회에서 4억만 하는 이유는 지금 2학기 때도 학생들이 계속 자퇴를 하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남겨뒀고, 만약에 2,7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내년 2월 말까지 남아있게 되면 나중에 그것

은 청산을 해서 대학회계로 세입을 그대로 시키면 됩니다.

○ **최낙렬 위원** 3,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2,7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표를 볼 때. 맨 밑에 이제 비회비 합치면.

○ **총무과장 배효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자 수익까지, 제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 **최낙렬 위원** 합친 거죠.

○ **총무과장 배효근** 예 4억 4000만원입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성회 청산액은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여기 명시되거나 법에 정하거나 하지 않나요?

○ **총무과장 배효근**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듣기는 이것을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장학금이라든가 학생 복지이라든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배효근** 예,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명시된 게 없습니다.

○ **최낙렬 위원** 확실해요?

○ **총무과장 배효근** 네.

○ **구정호 위원** 계속 그냥 저한테 해서. (웃음)

○ **박성수 위원** 그것은 청산을 할 때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거기에서 이제 정하면 되는데요 그런 특별히 그런 규제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기성회에서 쓰나 대학회계에서 쓰는 게 맞죠,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저희 예산세입으로 넣어서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기자재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쓰는 거죠.

○ **최낙렬 위원** 국장님은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 데나 쓸 수 있지 않고, 우리는 맨날 뭐 하면 교육부를 파는데, 그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딱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본 거예요.

○ **박성수 위원** 아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청산액을 어떻게 쓰라는 규제는 없었고요.

○ **최낙렬 위원** 지침.

○ **박성수 위원** 그것도 없습니다. 그 기성회 세출 지침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성회 예산을 작년까지 편성을 해왔잖습니까? 모든데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청산금을 어디다 쓰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얘기하

면 기성회를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기성회의 회계 규정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기성회 편성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청산할 때 이것은 대학회계로 넘기자고 하면 대학회계에서 뭐 금액이 큰 대학들은 돈이 생긴거죠 갑자기 그래서 다시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쓰면 됩니다. 기성회 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로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회계를 바꿔주면서.

○ **정연구 위원** 지난번 그 기성회계 대법원 판결 날 때 그때 기사 내용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존에 기성회계를 청산할 때 잔금을 아까 최낙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학금 또는 실험실 습비용, 이런 부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를 저도 본 것 같아 가지고요.

○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취지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규제나 판례로서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목적으로 쓰라는 얘기겠죠. 쓸려면 대학회계에 편성을 해서 쓰는 건데요. 어차피 이 돈이 들어오고 다른 돈이 나가나 전체 판 내에서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최낙렬 위원** 예, 그것은 뭐 확인하면 되는 거였고,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 **박성수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대학에서도.

○ **최낙렬 위원** 조금 더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직원분들,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 길던데. 교육 · 연구 학생지도비, 거기에 지금 4억 7,700만원이 배당이 됐는데 지금 이게 한 학기용으로 지금 책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배효근** 이것은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 **김종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 82명, 그다음에 대학회계직원 118명, 조교 26명 총 해서 226명입니다. 그래서 22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학기 예산에 맞춰서 한 학기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통과받기로는 4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4억 2,700만원에서 초과돼서 4억 8,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4억 7천 얼마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한 학기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제가 지금 타 대학에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400~800만원입니

다. 800인데 평균을 하면 한 590~600만원. 우리 학교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400이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는 연구부분에 한 30명분해서 3,45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지도 부분에 226명을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소진할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안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인원수로 해서 곱하기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지도비가 평균 단가가 200만원 되니까 200만원 곱하기 한 부분입니다.

○ **최낙렬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원래 사실 받으시던 거였으니까 회복되는 것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육부에서 주장한 것하고 어떻게 편찮을까 하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액으로 하라고 했는데 2014년도 결산에 직원분들 것이 2013년부터 안 나갔잖아요.

○ **김종필 위원** 예, 없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교육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김종필 위원** 예, 저희들이 7월 30일 날 교육부에 가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으니까 이제 교수님하고 통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교무처하고 새로 협의를 해 가지고 8월 6일날 또 교육부에 한번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결과 학생 지도비에 대해서는 저희 안을 가지고는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이제 2013년 8월달부터 저희는 공무원만 그것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대학회계직원 중에서는 기성회 직원하고 그다음에 조교선생님들은 올해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부분, 못 받은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7~8억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40% 정도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계약직이라든지, 모든 분 다 하니까 배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현재 공무원이 82명인데 82명 그 예산을 가지고 226명을 주려 하니까 2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원칙, 그러니까 결산액보다 늘어나면 안 된다는 그 원칙에는?

○ **김종필 위원** 이제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직원은 못 주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주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 **박성수 위원** 그 원칙은 지켜진다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당연히 지켜지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결산액이 없잖습니까? 첫 해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논리로 계속 밀고 나갈라고 하면 주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이 때문에 그것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 준해서 보통 각 대학마다 50%정도씩 잡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교수 몫도 마찬가지로 직원 몫도 필요한 신규 수요가 있을 때는 늘려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제가 그러면 우려되는 사항은 이번 년도는 2학기분만 반영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전년도 실적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올해는 반학기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최낙렬 위원** 곱하기 2

○ **구정호 위원** 곱하기 2를 들어가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 **박성수 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은 상관없고요.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을 100억을 잡아놔도 2억 쓰면 2억 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교육부 입장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은 탄력적으로 조정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4억을 잡아놔는데 2억만 쓰면 결산기준은 2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유를. 반기분이었다. 나머지 반기분에서 이런 증액사유가 있으면 교육부가 승인만 해 주면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승인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밖에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직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짚어가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법령의 취지에 맞게 지출이 되고 그게 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지 예산의 지금 몫은 그것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이승희 위원** 그 얘기는 교무처장님이나 기획

처장협의회 때도 저희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사유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액 해 주겠다, 그리고 교수 부분도 전년도 기준이라 했는데 그러면 신규채용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것은 합당한 사유에 들어간다, 그러면 증액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최낙렬 위원** 지금 그 직원이 지급비가 다 집행이 될 수 있다고 계획은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잡아놓고 못 쓰는?

○ **김종필 위원** 일단 저는 예산은 200만원 기준에서 다 잡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집행을 다 할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지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쓴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 본예산할 때 직원분들의 손해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국장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복지나 훈련이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봐야 그게 액수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다 지출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 또 오히려 더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 드릴 형편이 아닌 것 같네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고

○ **박성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령 교육·연구 학생지도비가 정상적으로 4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역량강화 예산은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교육역량 잘하는 대학으로 우수대학으로 뽑혀가지고 올해 ACE 인가에도 가점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금액 자체를 보거나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도 보면 실질적인 역량 배양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고서 워크숍도 9월에 할거거든요? 그래서 등등 해외연수는 과거부터 있어 왔었던 거고요. 작년에는 못했던 것 올해 조금 늘려서 더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액 자체는 적기 때문에 늘리면 늘렸지 이 교육·연구비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 교육·연구 학생지도비가 이제 사업적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제 표현으로 그냥 공무원 알바라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낙렬 위원**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정호 위원** 아까 다시 앞으로 뻗아서 기성회비 4억에서,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차피 사용하려면 대학회계에 또 편입돼야 되는 사안인 거죠?

○ **박성수 위원** 예, 그 부분은 기성회 청산할 때 이사회에서 대학회계로,

○ **구정호 위원** 승인 받아서 할 사항인데,

○ **박성수 위원** 청산하는 거죠.

○ **구정호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신 거죠?

○ **박성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 2월달, 지금 등록금 등등 다 끝나면 보통 마지막 정기추경은 본예산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1월이나 그때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지금 공공요금으로 편성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다 넣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 **최낙렬 위원** 그 말씀 사실 좀 기다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이 모자라게 잡아놓지 않았나요?

○ **박성수 위원** 예.

○ **최낙렬 위원** 그 모자라게 잡아놔서, 그때 말씀은 청산하면 거기에서 또 공공요금도 청산하는 걸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산액은 거의 다른 쪽에 가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 **박성수 위원** 어쨌거나 우리 뭐 설마 공공요금 못 내게 예산을 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걱정은 됐는데요.

○ **최낙렬 위원** 해마다 그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 **박성수 위원**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2학기 때 등록금 수입이 또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 잔액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3억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그렇게 맞췄죠. 국가회계는 1월 달에 하고 3월에 오니까 시차를 이용해서 전기세도 그렇고. 아무튼 공공요금을 못 내는 일은 없도록 예산을 짭니다. 예산 짜는 사람들이. 그래야죠.

○ **최낙렬 위원** 해마다..

○ **박성수 위원** 예, 그것은 회계상의 테크닉에 불과 한 거죠. 공공요금 못 낸 적은 없으니까요.

○ **구정호 위원** 저희 다시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 처음 배정돼 있었던 금액에서 6,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 회의를 했었을 때는 이 회의가 4월에 한 것도 아니고 7월에 우리가 재정위원회 첫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금액도 우리가 가장 축소를 해서 잡아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6,000만원이 꼭 감액된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결산기준이다 이런 것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성수 위원** 이것은 교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교무과장 김옥란**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결산액을 몰랐던 부분은 아닌데 처음에 저희가 지급계획 잡을 때도 저희 마음대로 좀 잡아서 교육부가서 처음에 재정위원회 하고 갔을 때는 사실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컨설팅도 나오고 혁신지원사업에 가점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교수회에서 공문 보내서 답변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도 1인당 평균 기준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원칙적으로 바로 가자 싶어서 작년도 결산액 그것을 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단가는 작년도 단가 잡고 인원은 올해 4월 1일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원을 잡다 보니까 작년에 부교수가 됐다가 승진하신 분은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계산에 맞춰서요. 예.

○ **구정호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이익을 교무처에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점심시간에도 논의한 것처럼 외국학생이 자꾸만 물밀 듯이 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저희, 학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영어강좌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에로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본 지난달에 열렸던 예산 자료를 보면 교수, 그러니까 교무처에서 교육훈련비로 잡혀있는 예산은 제로입니다. 워크숍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로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수의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비 성격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향후 저희 학교는 계속 글로벌지수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교수 당신네 몫으로,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게 아니라, 올해 내용은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의 개별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 학생을 들여와서 글로벌지수 높이는 만큼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임 총장님하고 합의가 돼서 해외연수, 교수의 해외 연수를 통해서 그런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내연수를 통해가지고 국내에 예를 들어서 그런 영어연수나 이런 것을 정규화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까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교무처에서 교수를 위한 예산으로 잡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방향성은 좀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 **교무과장 김옥란** 저희가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연수비나 이런 게 없는 게 맞습니다. 교육은 교수님 특강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 있게 해서 그런 연수비를 잡으면 지금 저희 지정선택 그래 갖고 이번에도 강의지원비 잡듯이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그렇고...

○ **구정호 위원** 잠깐만, 제가 강의지원비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저는 영어강좌를 많이 했었구요. 영어강좌를 하면서 느끼는 메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트가 이제 다 합의된 사항인데 점점 더 줄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교수님이 더 안 하시려고 할 것이고, 계속 외국인 학생은 와야지만 학교가 유지가 된다는지 학교의 점수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상충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 **최낙렬 위원** 부연설명 드리면 교수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면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연수기관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인 돈으로 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에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 **교무과장 김옥란** 예.

○ **간사 강태구** 그러면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 박성수 위원 없어요? 아니 그것을 안전심의를 해야지. 결론을.
- 최낙렬 위원 이런 정도로..
- 박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 간사 강태구 그러면 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면 위에 심의한 안건인 2015학년도 제 1차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원안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동의합니다.
- 간사 강태구 네 그러면 제3호 안건인 2015학년도 제1차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재정위원회 본 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운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일동 (박수)

.....

○출석 위원(6인)

박 성 수 최 낙 렬 구 정 호 이 승 희
정 연 구 김 중 필